「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조(목적)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제1조(목적)	ㅇ 조문 정비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세		
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		
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	1	ㅇ 조문 정비
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조약,	,	
법 및「관세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	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부와 정확성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한다.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자유무역협정	
	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u>다)</u> 및	
2. "원산지조사부서"란 다음 각 목의	2. "원산지조사부서"란 다음 각 목의	ㅇ 조직 개편 반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u>가</u> .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2과	가. 인천공항세관: 심사정보과	
<u>나</u> .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u>나</u> .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 2과	
2과 · 3과	<u>다</u> .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	
<u>다</u> .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과	2과 • 3과	
<u>라</u> . 대구세관·광주세관·평택직할세관:	라.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과	
심사과	<u>마</u> . 대구세관·광주세관·평택직할세관:	
	심사과	
3 ~18. (생략)	3.~1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비 고
19.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란 관세양허	19	ㅇ 조문 정비
외의 목적으로 <u>상공회의소 및 대한상</u>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u>공회의소</u> 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말한다.	(이하 '대한상공회의소 등' 이라 한다)	
	<u>가</u>	
<u><신 설></u>	20. "재조사"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	ㅇ 불복단계에서 재조사로
	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재조사	결정시의 업무처리 절차를
	결정서 주문에 따라 수행하는 원산지	제83조의2에 신설함에 따라
	조사를 말한다.	'재조사'용어 정의 추가
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법과 「관세	제4조(적용범위)	ㅇ 조문 정비
법」 및 조약・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가 적용	<u>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 적용한</u>	
되는 수입물품 및 원산지증명서가 작	<u>다.</u>	
성, 발급된 수출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1.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수입물품	
	2. 일반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수입물품	
	3.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발급된 수출	
	물품	
제6조(<u>관할</u>) ① 이 훈령에 따른 원산지	제6조(<u>원산지조사의 관할</u>) ① 이 훈령에	ㅇ 의미 및 표현 명확화
	- 3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조사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따른 원산지조사 <u>는 조사대상자의 사업</u>	
1.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 평	
하는 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택직할세관장이 하며, 관할하는 세관은	
2. 조사대상자의 사업장이 둘 이상인	별표 1과 같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사	
경우에는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의 소재	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본사 또는	
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	
	관장, 평택직할세관장이 원산지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u>원</u>	② <u>다음</u>	ㅇ 본문에 규정한 내용을
산지조사(자율점검을 포함한다)의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호로 구분하여 규정
요성, 신속성, 업무량 및 세관장의 관	는 관할세관을 조정할 수 있다.	
할조정 요청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	1. 관세청장이 원산지조사(자율점검을	
정할 수 있다.	포함한다)의 중요성, 신속성,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 조정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세관장의 관할세관 조정 요청이 있	
	<u>는 경우</u>	
<u><신 설></u>	③ 세관장이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아니	ㅇ 세관장의 관할 조정 관련
	하는 조사대상자를 조사하고자 하는 경	절차 누락 등의 방지를
	- 4 -	

현 행	개 정 안	비고
	우에는 원산지조사(자율점검을 포함한	위해 세관장의 관할 조정
	다) 계획보고 시에 관세청장에게 관할	요청 범위 및 시기 명확화
	세관 조정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u>한다.</u>	
제7조(사건의 이첩) ① 세관장은 원산	제7조(사건의 이첩) ①	ㅇ 조문 정비
지조사요원의 정보분석 결과 또는 원		
산지조사와 관련된 외부 제보내용이		
<u>관할</u> 외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와 관련	관할세관	
되거나 제6조제1항에서 정한 관할범	<u>관할세관 범위</u> 에	
<u>위</u> 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집된 정		
보와 자료 등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		
속히 이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제6	② 관세청장으로부터	ㅇ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개
조제2항에 따른 관할지 조정 사전승인	관할세관 조정 승인을	정사항 반영
<u>을</u>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원산지조사팀의 편성) ① 세관장	제8조(원산지조사팀의 편성) ①	ㅇ 조사팀의 원활한 운영을
은 원산지조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사팀 인원 제한
위해 원산지조사팀을 <u>편성ㆍ운영할</u>	<u>다음 각 호와 같이</u>	규정 정비
	- 5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u>수 있다.</u>	편성・운영할 수 있다.	
	1. 원산지조사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4	ㅇ 제2항 규정 통합
	명~8명 이내(다만, 세관의 인력 운영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3명 이하	
	<u>가능)</u>	
	2. 원산지조사팀의 팀장은 6급 또는 7급	
	중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하여 지정	
② 원산지조사팀은 4명 이내로 편성하	<u><삭 제></u>	ㅇ 제2항 규정을 제1항에
며, 팀장은 6급 또는 7급 중 전문성과		통합
경력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특화세관) ① (생략)	제9조(특화세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화세관으로 지정된 세관장은 특	2	ㅇ 조문 정비
화품목을 전담하는 <u>특화팀</u> 을 편성·운	<u>특화팀(이하'특</u>	
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화팀의 구성	<u>화팀'이라 한다)</u> 을	
은 제8조 <u>제2항</u> 을 준용한다.	제8조 <u>제1항</u> 을	
	,	
제11조(세관 간 지원) ① 세관장은 <u>사</u>	제11조(세관 간 지원) ① 세관장은 <u>다</u>	ㅇ 본문 내용을 호로 구분

된 의	ما حا ما	ul ¬
현 행 	개 정 안	비고
<u>안의 복잡성, 원산지조사 대상의 과</u>	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여 규정
다 등의 사유로 원산지조사 인력 및	<u>는</u> 관세청장에게 다른 세관의 원산지	
정보 등이 부족하여 원활한 원산지조	조사 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을 요청	
사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관세청	할 수 있다.	
장에게 다른 세관의 원산지조사 인력	1. 원산지조사 내용이 복잡한 경우	
및 정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	2. 원산지조사 대상이 과다하여 원활한	
다.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14조(원산지조사 <u>대상 범위</u>)	제14조(원산지조사 <u>대상 범위 및 기간</u>)	ㅇ 조문 정비 및 협정별로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u>대상범위</u> 및 기	<u>대상 범위</u> 및 기	상이한 자료보관의무기
간을 정할 <u>때</u> 법 제35조, 「관세법」	간을 정할 때 <u>에는</u>	간을 고려하여 원산지조
제21조, 각 협정 및 그 밖에 수출입 의		사 대상 범위 및 기간
무이행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u>과세부</u>	관세부과의	설정
<u>과제척기간</u> 과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여	제척기간, 협정별 자료보관의무 기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		
에서 정한다.		
제15조(<u>기간</u> 및 기간의 계산) ① 세관	제15조(원산지조사 기간 및 기간의 계산)	ㅇ 의미 및 표현 명확화
장은 <u>「관세법 시행령」제139</u> 조의2제1	① 세관장은 <u>법 제17조제1항, 법 제18조</u>	
<u>항</u> 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수출입규모,	제1항 등에 따른 국내조사 기간을 「관	ㅇ 국내 원산지조사 기간
조사인원ㆍ방법ㆍ범위 및 난이도 등	세법 시행령」제139조의2제1항에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u>다음 각 호의</u>		
기간 이내에서 원산지조사 기간을 정		
<u>한다.</u>	<u>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u>	
1. 서면조사: 조사대상자가 자료제출을	에서 정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35조, 제36조, 제55조, 제56조 등에서	
2. 현지조사: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생	규정하고 있는 관세청장 승인일까지를	
산시설,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최초	포함한다.	
방문한 날부터 20일 이내	1. 서면조사 : 조사대상자가 자료제출	
	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	
	2. 현지조사 :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생	
	산시설,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최초	
	방문한 날부터 50일 이내[방문조사 기	
	간은 20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	
	외)로 함]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②	ㅇ 조문 정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u>	<u>경우에는</u>	
(이하생략)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비고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현지조사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	ㅇ 국제 원산지조사 기간
기간의 계산은 현지 최초 방문일부터	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조사 기한을 달	예외규정 신설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공휴일	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	
과 토요일은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	<u>다.</u>	
<u>다.</u>		
<u><신 설></u>	⑤ 국내 조사를 마치고 법 제17조제1항	ㅇ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기간을 준수하기
	국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	위해 근거조항 신설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조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조사중지 및 재개) ① (생	제15조의2(조사중지 및 재개) ① (현행과	
략)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u>5. <삭 제></u>	ㅇ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 원산지의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		조사중지 사유에서 제외
을 요청하거나,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수출자, 생산자 등에게 서면조사 또		
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 9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u>6</u> . 그 밖에 제1호부터 <u>제5호</u> 까지에	<u> 6</u> <u>제4호</u>	ㅇ 조문 정비
준하여 조사를 중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u> <신 설></u>	제15조의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 '한-미 FTA 통관원칙에
	<u>자유무역협정 조사기간)</u> ① 세관장은	따른 원산지검증 업무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미합	지침'상의 원산지검증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한·미 F	기간 등을 훈령에 반영
	TA'라 한다)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수	
	출입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 중 먼저 도달하는 날 이	
	내에 한·미 FTA 제6.18조제5항에 따른	
	최종 결정을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	
	<u> 공하여야 한다.</u>	

현 행	개 정 안	비 고
	1. 수입자가 원산지조사 통지서를 받은	
	<u>날부터 12개월</u>	
	2. 한·미 FTA 제6.18조제4항에 따른	
	예비결정내용 제공 후 추가 정보 제출	
	이 완료된 날부터 90일. 다만, 추가 정	
	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	
	자가 예비결정내용을 제공받은 날부	
	터 30일이 경과된 날을 추가 정보 제출	
	이 완료된 날로 간주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본청 승인 하에 원산지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미국 관세당국과의 협정 해석상 이	
	견으로 검증이 지연되는 경우	
	2.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사	
	건의 불복 진행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म) य
	3. 그 밖에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국내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른 결	
	정·절차의 완료를 위한 기간 고려 등	
	기간 연장이 필요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u>경우</u>	
제17조(원산지조사 방법의 변경)	제17조(원산지조사 방법의 변경)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4	ㅇ 규칙 제23조 단서의 국내
조사대상자에게 현지조사 30일 전에	<u>15일 전까지</u>	현지조사 사전통지 기간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		반영
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하생략)	(현행과 같음)	
제21조(청렴협약) ① 원산지조사팀장	제21조(청렴협약) ①	ㅇ 조문 정비
은 국내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때에		
조사대상자와 함께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조		
사대상자가 청렴협약서 작성에 동의		
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를 대리하는 <u>변호사, 관세</u> 사(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	<u>변호사 또는 관세사</u>	
<u>^r</u> (이야 네디인 이다 안나)의 성명		

현 행	개 정 안	비고
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서명 거부'라		
고 표기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조사대상자의 협력) ① (생략)	제23조(조사대상자의 협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원산지조	2	ㅇ 의미 및 표현 명확화
사 대상물품, 장부 또는 증빙서류, 그		
밖에 관련 문서의 제시, 열람 또는 제		
출명령에 대하여 기피·지연 하거나		
파기・은닉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u>관련 법</u> 권에 따리 조시기가이 여자 천거라세	
연장, 협정관세 적용제한, 벌칙 또는	령에 따라 조사기간의 연장, 협정관세 적용제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부과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30조(<u>정보분석</u>)	제30조(정보분석 계획 및 결과보고)	ㅇ 의미 및 표현 명확화
① ~ ④ (생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세관장은 제3항의 정보분석 결과에	ㅇ 정보분석심의회 폐지 및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원	폐지에 따른 정보분석
	산지조사 착수 여부 등을 정할 수 있다.	결과 처리방안 신설
	- 13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1. 정보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처리 방향	
	2. 조사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및 공정성	
	3. 원산지조사 의뢰 건에 대한 원산지	
	조사 미착수 및 자체종결 사유의 타당성	
	4. 타 세관에서 이첩 받은 정보분석 결	
	과에 대한 처리 방향과 정보제공자(세	
	관)의 기여도를 고려한 실적 배분율	
제31조(원산지정보분석심의회) ① 세	제31조 <삭 제>	○ 원산지정보분석심의회 폐지
관장은 정보분석의 투명성과 조사대		
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산지정보분석심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의 효율을 위해		
원산지정보분석심의회를「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16조의 정보분		
석심의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원산지정보분석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현 행	개 정 안	비고
른다.		
1. 위원장: 심사국장(다만, 서울세관은		
심사2국장, 대구세관·광주세관·평택		
세관은 심사과장으로 한다.)		
2. 위원: FTA부서장, 원산지조사팀장		
또는 FTA주무계장 중 위원장이 지명		
<u>한 자</u>		
③ 세관 자체적으로 원산지정보분석심		
의회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업		
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16조의 정		
보분석심의회에 안건을 올릴 수 있다.		
④ 원산지정보분석심의회는 정보분석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		
1. 정보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처리 방향		
2. 조사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및 공정성		
3. 원산지조사 의뢰 건에 대한 원산지		
조사 미착수 및 자체종결 사유의 타당성		
	- 15 -	

현 행	개 정 안	비고
4. 타 세관에서 이첩 받은 정보분석 결		
과에 대한 처리 방향과 정보제공자(세		
관)의 기여도를 고려한 실적 배분율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원산지정보		
분석심의회 심의결과를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제34조(국내 서면조사)	제34조(국내 서면조사)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ㅇ 원산지조사 자료제출 요
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	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	구 등 간소화 및 표준화
료 목록표 중 <u>해당되는</u> 서류	료 목록표 중 <u>필요한</u> 서류	지침('17.1.12) 내용 반영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제35조(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ㅇ 서면조사 완료는 관세청
① 세관장은 제34조의 국내 서면조사	①	장의 승인을 받은 때이므로
를 <u>완료한 때에는</u> 별지 제49호서식의	- <u>실시</u> 한 후,	'완료한 때에는'을 '실시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 <u>에</u> 체약상대국		한 후'로 표현 수정
	- 16 -	

현 행	 개 정 안	비고
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조사 결과를	1호 등에 의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u>통지할</u> 서한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	에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ㅇ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에 회신이 필요한 경우
하생략)		에 한해 서한문을 첨부
	(현행과 같음)	하도록 수정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에 따	④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에 따	ㅇ 원산지조사 완료는 관세
라 원산지조사를 <u>완료한 경우에는</u>	라 원산지조사를 <u>마치면,</u>	청장의 결과보고 승인을 받은
(이하생략)	(현행과 같음)	때이므로 '완료한 경우에
		는'을 '마치면'으로 표현
		수정
<u><신 설></u>	⑤ 원산지조사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ㅇ 인증수출자 사후관리를
	조사대상자에게 국내 서면조사 결과를	위한 조항 신설
	통지하는 때에 조사대상자가 인증수출	
	자이며, 원산지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에는 인증 세관 원산지인증수출자 관	
	리 담당 부서장에게도 결과를 통지하	
	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6조(국내현지조사)	제36조(국내현지조사)	
① ~ ⑦ (생략)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내 현지조사 결과보고는 별지 제	8	ㅇ 제35조제5항 신설에 의한
22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		준용 규정 정비
고서로 하고, 결과보고 절차 및 통지		
는 제35조 제1항, <u>제2항 및 제4항</u> 을 준	<u>제</u> 2항, 제4항	
용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는 "현지조	<u>및 제5항</u> 을	
사"로 본다.		
제39조(정기조사 대상 선정기준)	제39조(정기조사 대상 선정기준)	
① ~ ④ (생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32조의3	⑤ <삭 제>	ㅇ 관세법 제232조의3 원산지
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에 다음 각		확인위원회 폐지(21.12.21)
호의 사항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사항 반영
있다.		
⑥ 원산지확인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u>⑥ <삭 제></u>	ㅇ 관세법 제232조의3 원산지
에 관한 사항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확인위원회 폐지(21.12.21)
관한 고시」를 따른다.		사항 반영
제40조(정기조사 대상 선정) ① 관세청	제40조(정기조사 대상 선정) ① 관세청	ㅇ 조문 정비

취 제	ما حال	w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장은 정기조사 대상 업체를 반기별로	장은 정기조사 대상 업체를 반기별로	
선정한 후 세관장에게 통보 <u>한다.</u>	선정한 후 세관장에게 통보 <u>할 수 있다</u>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기별	② <삭 제>	ㅇ 관세법 제232조의3 원산지
조사 대상 업체 외에 원산지확인위원회		확인위원회 폐지(21.12.21)
심의결과에 따른 차순위 업체를 정기		사항 반영
조사 대상 후보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50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제50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ㅇ 원산지조사 자료제출 요
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	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	구 등 간소화 및 표준화
료 목록표 중 <u>해당되는</u> 서류	료 목록표 중 <u>필요한</u> 서류	지침('17.1.12) 내용 반영
② ~ ④ (생략)	②~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자율점검) ① ~ ② (생략)	제51조(자율점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수입자가 제2항에	3	ㅇ 규칙 제22조제3항은 조사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통지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의
원산지조사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제		경우로써 자율점검 단계에
출한 경우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
그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할 수 없으므로 삭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현 행	개 정 안	비고
있다. <u>다만</u> , 이 경우 세관장은 규칙	<단서 삭제>	
제22조제3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u>수 있다.</u>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3조(국내 서면조사 통지)	제53조(국내 서면조사 통지)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4	ㅇ「부가가치세법」 근거법조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를 수령한 경	<u>것으로</u>	개정 사항에 따라 삭제
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 및	및 가산세 경감 배제
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관세법」제42조의2제1항제5호에 따	조치를 위한 근거 조문
제한 및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 배	른	추가
제를 위한 업무시스템 등록 등의 사전		
조치를 한다.		
제55조(결과보고 및 통지) ① 세관장은	제55조(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ㅇ 조문 정비 및 제15조 원
국내 서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협	① 제54조의 국내 서면조사	산지조사 기간 준수를
정에 따라 예비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를 실시 한 후, 제15조에 따른 원산지	위한 근거 조문 추가
	- 20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포함) 그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	조사 기간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지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협정에	
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승인	따라 예비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	
<u>을 요청하여야 한다.</u> (이하생략)	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	
	<u>아야 한다.</u>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 원산	4	ㅇ 법 제17조제6항에서 '마
지가 확정되어 원산지조사를 <u>완료한</u>	<u>마치면</u>	치면'으로 규정하고 있
경우에는 제1항의 관세청장의 승인을		으므로 표현 수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이하생략)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국제조사를	ㅇ 국제조사를 추가로 실시
	하는 경우에는 제62조제3항 및 제66조	하는 경우 국제조사 사
	제5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실통지와 최종 결과통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제4항에	절차를 구분
	의한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는 생략하고 국제조사를 완료한	
	후에 최종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한다.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56조(국내 현지조사)	제56조(국내 현지조사)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내 현지조사의 연기 및 조사절	③	ㅇ 국내 현지조사 이후 예
차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및 제5항	제36조제3항, 제5항	비결정통지 절차를 진행
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u>부터 제8항 및 제55조</u> .	하는 경우 준용 규정 마련
제59조(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제59조(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ㅇ 원산지조사를 종료한 경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종료하거나	① 영 제18조에 따라	우는 협정관세 적용 보
영 제18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보류	(현행과 같음)	류기간의 만료에 해당하
를 해제한 때에는 (이하생략)		여 협정관세 적용 보류
		해제 통지 대상이 아님
②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 법 제7	② <u>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u>	ㅇ 조문 정비
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	보류 해제통지를 하는	
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협정관		
세 적용 보류 물품에 대한 세액의 경		
정 및 관세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		
한다.		
<u><신 설></u>	제59조의2(협정관세 적용 보류기간의	ㅇ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만료) ① 세관장은 제58조에 따른 협	보류기간 만료 및 원산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정관세 적용 보류기간이 만료된 때에	지조사 결과에 따른 보
	는 수입자에게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류 해제 절차 명확화
	협정관세 적용 보류 만료통지서를 보	
	내야 한다.	
<u><신 설></u>	②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 법 제7	ㅇ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류기간 만료 및 원산
	확인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적	지조사 결과에 따른 보
	용 보류 물품에 대한 세액의 경정 및	류 해제 절차 명확화
	관세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제63조(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 참관)	제63조(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 참관)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참관팀의 성명,	4	ㅇ 법 제17조제2항 조문 문
직위와 <u>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u> 의 명단	체약상대국에 소재하는 수출자,	구를 인용하여 표현 명
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한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	확화
다.	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64조 (회신결과의 처리 및 통지)	제64조 (회신결과의 처리 및 통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회신을 받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회신을 받	ㅇ 실무 절차를 반영하여 제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회신 내용을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회신 내용을	2항과 제3항의 순서 변경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	
확인요청 회신 통지서에 기재하여 수	확인요청 회신 통지서에 기재하여 수	
입자에게 통보한다.	입자에게 통보한다.	
②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u>③</u>	ㅇ 회신결과 처리 기산일
회신결과를 <u>검토하여</u> 30일 이내에 별지	검토하여 원산지 해당 여부를	명확화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	확인한 날부터	
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④ 관세청장은 <u>제2항</u> 의 결과보고서를	④ <u>제3항</u> 의	ㅇ 조문 정비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하생략)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6	ㅇ 법 제17조제6항 조문 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구로 수정("조사결과와 그
자에게 원산지조사 <u>결과</u> (이하생략)	<u>결과와</u> (현행과 같음)	결정내용"')
제65조(국제 서면조사 계획보고)	제65조(국제 서면조사 계획보고)	ㅇ 제63조제4항 신설 문구와

현 행	개 정 안	비고
①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	①	중복 문구의 삭제
라 체약상대국에 소재하는 수출자, 생	- <u>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u> 를 (현행과	
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같음)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 "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이하생략)		
제66조(국제 서면조사)	제66조(국제 서면조사)	
① ~ ④ (생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 서면	⑤	ㅇ 국제 서면조사 통지에
조사를 통지한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		사용되는 서식 명확화
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u>서면</u>	별지	
<u>으로</u> 통지한다. 다만, 체약상대국의 관	제38호의2서식으로	
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한		
경우에만 한다.		
제67조(국제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제67조(국제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ㅇ 결과보고 시점 명확화
① 세관장은 <u>국제 서면조사를 완료한</u>	① 제66조의 국제 서면조사	
경우에는 완료일 또는 협정에 따라 예	를 실시 한 후,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	ㅇ 예비결정통지 전에 관세
비결정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 정	산지조사 기간 이내에 별지 제49호서	청장에게 결과보고서를
	- 25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보 제출기한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	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승인 받도록 규정
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협정에 따라 예비결정을 하는 경우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포함)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	
<u>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u>	인을 받아야 한다_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은 협정에서 예비결정통지	4	ㅇ 예비결정통지 절차를 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u>경우,</u> 국제 서	<u>경우에는</u>	치는 경우 예비결정통지
면조사 결과 조사 대상 물품이 원산		시점 명확화
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u>수입자</u>	, <u>수입자에</u>	
<u>에게</u> 별지 제50호의3서식의 예비결정	게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	
통지서를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조사대상 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이하생략)	(현행과 같음)	
⑤ 세관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원산	⑤	ㅇ 예비결정통지 절차를 거
지조사를 완료한 <u>경우</u> 또는 <u>제4항에</u>	<u>경우에는 제1항에</u>	치는 경우와 구분 필요
의한 예비결정통지 절차를 완료한 경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	30일 이내 또는 제4항에 의한 예비결정	ㅇ 원산지조사 대상 수입자는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추가 정보	국내 수입자이므로 불필
	제출기한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한 표현 삭제
,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		
지서를 <u>국내 수입자</u> 에게 통지한다.	<u>수입자</u> (현행	
(이하 생략)	과 같음)	
제69조(국제 현지조사 예정통지)	제69조(국제 현지조사 예정통지)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로	4	ㅇ「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
부터 국제 현지조사 동의를 얻은 경우		에 관한 훈령」제3조 허
에는「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가권자로 수정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		
장계획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해외통	「관세청 공무	
관지원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제3조에 따	
	른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71조(국제 현지조사 <u>결과통지</u>)	제71조(국제 현지조사 결과 <u>보고 및</u> 통지)	

현 행	개 정 안	비고
① 세관장은 제70조에 따른 국제 현지	①	○ 결과보고 시점 명확화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3	실시 한 후, 제15조제5항에 따른	
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산지	원산지조사 기간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	 작성(협정	
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에 따라 예비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	
	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_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 현지조	②	ㅇ 조문 정비
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경우</u> 조사내용과 조사결과에	<u>경우에는</u>	
대한 보완ㆍ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③ 국제 현지조사 결과통지는 제67조	③ 제67조 제3항	ㅇ 준용 규정 정비
제3항제1호를 준용한다.	<u>부터 제5항까지</u> 를	
제73조(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 ① 세	제73조(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 ①	ㅇ 조문 정비
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산		
지조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		
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운영의 효율		

현 행	개 정 안	म) य
화를 위해 <u>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u> 를	<u>심의회</u> 를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50		
조의 심사처분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75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건에	6. 제75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ㅇ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
대해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하는 경우'에 있어, 이
<u>경우</u>		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인지
		또는 원산지조사처분심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인지 등에 대한 해석
		상의 이견이 있을 수 있
		어 표현 명확화
2	②	ㅇ 조직 개편 반영

현 행	개 정 안	비고
, 국장이 없	, 그 밖에	1 —
	,	
<u>는 세관은 심사과장</u> 으로 할 수 있다.	세관은 심사정보과장 또는 심사과장으	
	로 할 수 있다.	
③ ~ ⑪ (생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74조(원산지조사 결과통지) ① (생	제74조(원산지조사 결과통지) ① (현	ㅇ 원산지조사 대상 수입자는
략) 다만, <u>국내 수입자</u> 에게 영 제44	행과 같음) 다만, <u>수입자</u> 에게	국내 수입자이므로 불필
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에 대		요한 표현 삭제
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음을 통		, ,
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 제1항 조문 정비하여 제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문과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가산		5항으로 이동 신설
세 등 면제 신청서 및 별지 제30호의		
4서식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		
청서를 함께 송부한다. <u>세관장은 가</u>	<삭제>	
산세 등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		
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등		
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		
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0		
호의3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u>야 한다.</u>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	4	ㅇ「부가가치세법」근거법조
사 결과통지서를 보낼 때에는 제53조		개정 사항에 따라 삭제
제4항의 <u>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한 및</u>	<u>가산세 경감</u>	
<u>가산세 경감</u> 배제 조치를 해제한다.	(현행과 같음)	
(이하생략)		
<u><신 설></u>	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가산세 등	ㅇ 제1항 후단 조문을 제5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납세	항으로 이동 신설
	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0호의3서식	
	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81조(불복청구 등 보고) ① (생략)	제81조(불복청구 등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불복청구 등	2	ㅇ 조문 정비
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u>자유무역협정</u>	<u>인천세관 자유</u>	
검증1과와 서울세관 심사2국 및 부산	무역협정검증1과와 서울세관 심사2국	
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과에 FTA쟁송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지원팀을 둘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비고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83조의2(재조사 처리)	ㅇ 재조사 처리절차 신설
	① 세관장은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	
	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u> <신 설></u>	② 세관장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 된	ㅇ 재조사 처리절차 신설
	처분의 취소·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50호의2서식으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심사청구인	
	(「관세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세관장은 재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ㅇ 재조사 처리절차 신설
	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제128조제5항 등을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06조(회신결과의 처리 및 통지)	제106조(회신결과의 처리 및 통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②	ㅇ 조문 정비
검토하여 승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u>경우</u> 조사결과의 수정, 재조사	<u>경우에는</u>	
요청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09조(재검토 기한)	제109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u>2022년 1월 1일</u> 기준	<u>2023년 x월 x일</u>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u>12월 31일</u>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월 일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u><신 설></u>	부칙	
	<제xxxx호, 2023.02.xx.>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x월 x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비고
[별표 1]	원산지조사의 관할(제6조제1항	[별표 1]	원산지조사의	관할(제6조제1항	
관련) <	개 정>	관련)			
김종관합세관	걲증괉핥구역		T	Idea a	ㅇ 조직 개편 반영
252241	温声思能术品	조사관합세관	3.)	 간한구역	
 	서울세관, 안양세관, 파주세관, 성남세관, 청주세관, 천안 세관, 구로지원센터, 도라산지원센터, 의정부지원센터, 총	<u> 있천공항본부세관</u>	인천공항세관, 김포공항제]관의 관한 구역	
	주지원센터의 관할 구역	서울본부세관		세관, 성남세관, 청주세관, 천안	
인천본부세관	인천세관, 안산세관, 수원세관, 김포공항세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부평지원센터의 관할 구역	시혼근구세인	산지원센터, 의정부지원센 원주지원센터의 <u>관할 구역</u>	터, 충주지원센터, 고성지원센터,	
	4M10M0, 70M0099 0 0 1 9		<u>부산세관</u> , 양산세관, 용당	· 	
부산본부세 관	부산세관, 양산세관, 용당세관, 김해공항세관, 마산세관, 창원세관, 경남서부세관, 경남남부세관, 부산국제우편지 원센터, 진해지원센터, 사천지원센터, 통영지원센터의 관	부산본부세관		경남남분세관, 분산국제운편지 천지원센터, 통영지원센터의 <u>관</u>	
	할 구역	인천본부세관	인천세관, 안산세관, 수위 국제우편세관 , 부평지원성	원세관, <u>광포공항세관, 인천공항</u> 11터의 과학 구역	
	대구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울산세관, 속초세관, 동해		THE PROPERTY OF THE C	Albertandenske	
대구본부세관	세관, 온산지원센터, 고성지원센터, 원주지원센터의 관할 구역	대구본부세관	대구세관, 구미세관, 포항 세관 , 온산지원센터, 고성 고였	세관, 울산세관, 속 초세관, 통해 지원센터, 원주지원센터의 <u>관할</u>	
	광주세관, 군산세관, 목포세관, 광양세관, 여수세관, 제주				
광주본부세관	당구세원, 군산세원, 목모세원, 당당세원, 어구세원, 제구세관, 전주세관, 대전세관, 완도지원센터, 익산지원센터, 대산지원센터, 보령지원센터의 관할 구역	광주본부세관		세관, 광양세관, 여수세관, 제주 *, 완도지원센터, 익산지원센터, 배터의 관할 구역	
평택직할세관	평택직할세관의 관할구역	평택직할세관	평택직할세관의 관할구역		
	1	* 관계청 조각 개편에 대	 마라 관할세관이 변경되는 경우	1에 따듬	

 현 행	개 정 안	비고
[별표 2]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개 정>	"	,
1. 공통사항 요구자료	1. 공통사항 요구자료	ㅇ 문구 수정
구 분 요구자료명 시항 - 업체 현황, 소개서 [예사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조직도, 임직원 현황] - 본사·지사·계열사 설명 자료(해당되는 경우) - 보사·지사·계열사 설명 자료(해당되는 경우)	구 분 요구지료명 사항 실의시항 • 업체 현황, 소개서 [예샤 사업자등록증, 법인 동기부등본, 조직도, 인직원 현황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업증 * 업체명, 대표자 성명 창, 위치, 연락처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업증 * 주소, 전희, 박스, 홈페이지 임직원 현황 * 인적 현황 확인 * 조직도 · 임직원 현황 * 인적 한황 확인 * 조직도 · 임직원 현황 자료(해당되는 경우) * 본사·지사·계열사 표막 자료(해당되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 * 재 여부, 각각의 역할	
생산능력 - 공장등록증 사본 - 생산 대로(능력) 확인 - 실제 생산 여부 생산능력 - 생산설비 현황 정보 - 생산설비 증류, 생산능력 - 연간 생산량 정보 - 생산세품종류 및 생산량	- 공장등록증 시본 - 생산 규모(능력) 확인 - 실제 생산 여부 - 공장별 생산물품 정보 - 생산 제품의 종류 확인 - 생산생비종류, 생산능력 - 연간 생산량 정보 - 연간 생산량 정보 - 생산제품종류 및 생산량	
원산지 관리 조직 및 원산지관리 수준 확인 원산지관리 전달조직 유무 원산지관리 대유얼 원산지관리 사석템설명자료 [여사: 애뉴얼, 메뉴구성도 고도대, 개시한데대다], 약가례 보다 한		
	조사대상물품 소개 자료 조사대상물품의 기능 조사대상물품의 설명 홍보자료 등] * 조사대상물품의 설명 홍도 등 정보 확인 * 품목분류(HS)의 근거 * HS 정확성 및 근거자료	

조시대상

물품정보

거래관계

• 무역거래관계의 설명

• 직점운송원칙 총족 여부

• 품목분류(HS) 근거자료 확인

• 거래관계 좀빙 자료 🕒 거래 당시자 파악

[예시 무역계약서 구매요청서 • 운송 경로 파악

[예사] 제조공정도, 원재료

명세서(BOM), 용도설명서,

품목분류 시전심사서

명세세(Packing List), 수출입

[예사 소항[증권(BL), AWB]

운송경로 확인서류

원산지증명서(C/O)

신고세

검증대상

물품정보

거래관계

• 품목분류(HS) 근거자료 확인

• 거래관계 증빙 자료 🕒 거래 당사자 파악

[에시 무역제약서 구매요청서 • 운송 경로 파악

(PO), 송품장(Invoice), 포장 ● 원산지증명 관계 파악 ▶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예사] 제조공정도, 원재료

명세서(BOM), 용도설명서,

품목분류 시전심사서

명세세(Packing List), 수출입

[예사 선하증권(BL), AWB]

운송경로 확인서류

• 원산지증명서(C/D)

신고세

(P/O), 송품장(Invoice), 포장 ● 원산지증명 관계 파악 ▶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 무역거래관계의 설명

·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_	
	현행		개 정 안	비	고
	2]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배 정>	[별표	E 2]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2. 완전성 구 분	생산기준 요구자료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당 질의사당	2. 완전성	생산기준 요구자료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공의사항	ㅇ 문구 수정	
	① 수출자=생산자		① 수출자=생산자		
농산물	② 수출자≠생산자 - 생산지역(생산자)에서 집하 ■ 생산지와 집하지간 운송 ■ 생산자의 농장으로부 다 수출자)까지의 운송 사실 확인 다 수출자의 집하지까지 지의 운송증빙과 거래 자료 사실 확인 중빙자료 제출 요청 ③ 역외산 대체가능물품	농산물	② 수출자≠생산자 • 생산지역(생산자)에서 집하 지역(수출자까지의 운송 중빙 지료, 거래 중빙 사실 확인 ③ 역외산 대체가능물품		
	(재료)이 존재하는 경우 • 역내산과 역외산 물품의 물리적 구분 증빙자료 또는 회계적 재고관리 증빙자료 당시자료 등에 자료 등에 가료 등에 가능물 등에 무확인 보안 수 있는 증빙자료 기생 수 있는 경험자료 등에서: 생산공정 설명자료 등에서: 생산공정 확인 사상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청 • 생산공정 설명자료 등에서: 생산공정도,		(재료)이 존재하는 경우 - 역내산과 역외산 물품의 = 집하지에서 역내산과 =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재 물리적 구분 증빙자료 또는 회계적 재교관리 증빙자료 - 본학인 - 본학 수 있는 증빙자료 - 생산공정 설명자료 - 생산공정 확인 - 생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청		
	생산설명서 등] ① 도축기준일 경우 · 도축 시실을 확인할 수 ■ 도축기준 충족 확인자료 ▶ 도축 시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빙자료 제출 열세기: 검역중 등]		생산설명서 등] ① 도축기준일 경우 •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 도축기준 충족 확인자료		
축산물	② 환전생산기준일 경우 ● 실제 생산자 이부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실제 생산자이 여부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실제 생산자에 대한 정보 요청 중빙자료 ● 장선황 확인 생산자에 대한 정보 요청 존합원확인서류] ● 생산 능력(규모) 확인 요청 생산 능력 확인 자료 [예사 연간 생산형, 생산시설 확인자료 요청 시설, 생산인력 등] ※ 생산사실 확인자료 요청	축산물	② 환전생산기준일 경우 ● 실제 생산자 여부 확인 ● 조시대상물품의 실제 생산자 여부 확인 ● 조시대상물품의 실제 생산자에 대한 정보 요청 중빙자료 ● 생산 능력(규모) 확인 ● 조시대상물품의 실제 생산자에 대한 정보 요청 조합원확인서류 ● 조시대상물품의 실제 농장 현황 자료 요청 [예사: 연간 생산링, 생산 시설, 생산시설, 행인자료 요청 ● 생산시설, 확인자료 요청 시설, 생산인력 등] ● 청		

-1 -11	, _,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표 2]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개 정>	[별표 2]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절의사항	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② 역외산 대체가능물품	ㅇ 문구 수정
(재료)이 존재하는 경우 • 역내신과 역외산 물품의 ■ <u>집하지에서 역</u> 내산 물품 ▶ <u>역외산 대체가능물품(재</u> 물리적 구분 증빙자료 과 <u>역외산 대체가능물</u> 료)이 <u>역</u> 내산 물품과 혼 또는 회계적 재고관리 품이 혼재되는 경우 구 증빙자료 분 여부 확인 분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생산공정 설명자료 ■ 생산공정 확인 ▶ 생산공정을 확인할 수	(재료)이 존재하는 경우 • 열대산과 열위산 물품의 • 집하지에서 열대산 물품 • 열위산 대체가능물품(재 물리적 구분 증빙자료 과 열위산 대체가능물 로)이 열대산 물품과 혼 또는 회계적 재고관리 품이 혼재되는 경우 구 장반자료 • 생산공정 설명자료 • 생산공정 확인 • 생산공정을 확인할 수	
[예시:생산공정도, 생산설명서 등] • 원양 생산 중빙자료 ■ 원양에서 어로・양식 ▶ 원양에서 어로・양식 [예시: 선박국적증명서, 원양어업하기증, 원양 어휘반입신고확인서 등]	[예시: 생산공정도, 생산설명서 등] • 원양 생산 증빙자료 ■ 원양에서 어로・양식 ▶ 원양에서 어로・양식 [예시: 선박국적증명서, 원양어업헌가증, 원양 어휘반입신교확인서 등]	
• 근해 생산 증빙자료 ■ 근해에서 어로・양식 ▶ 근해에서 어로・양식 [에시: 어업허가증, 출하 등 생산한 사실 확인 등 생산한 증빙자료 확인서류, 수산물수매 확인서 등]	- 근해 생산 증빙자료 ■ 근해에서 어로·앙식 ▶ 근해에서 어로·앙식 등 생산한 사실 확인 등 생산한 증빙자료 자출 요청 환인서류, 순산물수매 황인서 등]	
• 생산공정 설명자료 ■ 생산공정 확인 ▶ 생산공정을 확인할 수 [예시: 생산공정도, 생산설명서 등]	• 생산공정 설명자료 ■ 생산공정 확인 ■ 생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u>자료제출</u> 요청 생산설명서 등]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표 2]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별표 2]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개 정>

3. 세번변경기준 요구자료

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시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될증, 송품장(Invoice), 선형증권(BN), 포장맹세서 (Packing List), 대급지급	North Control of the	▶ 원재료 구매 <u>자료제출</u> 요청
	자료 등] - 원재료의 원산자증빙자료 [에시: 원산지증명서(CXXX)] (2) 국내 조탈 원재료	■ 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 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원재료의 원산지증병 <u>자료</u> 제 출 요청
원재료 구매단계	원재료 구매 자료 [예시: 계약서, 거래맹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 원재료의 구매시실 확인 ■ 원재료의 구매처(원산지) 확인 ■ 원재료의 품목분류	▶ 원재료 구매 <u>자료제출</u> 요청
	[예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u>자료</u> 제출 요청
	• 원재료 구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구매원장, 자재원장, 구매전표, ERP시스템 출력자료]		 원재료의 구매와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
		 실제 제조 여부(지시자, 작업자, 작업자, 작업부서) 확인 공정내역, 기공순서, 제조일자, 불인정공정 이상 공정 수행 여부 확인 	 제 조공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청
생산단계	- 원재료 내역 증빙자료 [예시: BOM, 철강재의 경우 MⅢ Sheet 등]	 원재료의 부풍번호(코드), 풀명, 규격, 소요랑, 공급처, 원산지, HS 등 확인 제조공정도와의 연계성 확인 	 검증대상물품의 원재료 내역을 증빙할 자료제출 요청
	• 검증대상물품 생산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EFP시스템 출력자료]	 원재료의 입출고 내역, 소요량 확인 생산증빙과의 일치성 확인 	 검증대상물품의 생신 과 관련된 회계 증팅 지료제출 요청
	• 임가공 증빙자료 [예시: 임가공거래계약서, 작업지시서, 임가공비	■ 임가공(유상사금/무상사금) 사실 확인	 임기공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빙자료 제출 요청

3. 세번변경기준 요구자료

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시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에시: 계약서, 수입신고 필증, 송품장(Invoice), 선형증권(BN), 포장맹세서 (Packing List), 대금지금	1,50000 1,	요청
원재료 구매단계	[에시: 원산지증명서(CC)] ② 국내 조달 원재료 • 원재료 구매 자료 [에시: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원재료의 구매시실 확인 원재료의 구매처(원산지) 확인 원재료의 품목분류 (HS)부호 확인 원재료의 원산지, 기록	자료 제출 요청 ▶ 원재료 구매 자료제출 요청
	국내제조확인서] 원재료 구매 관련 회계 중빙자료 [예시: 구매원장, 지재원장, 구매전표, ERP시스템 출력자료]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제조 공정 설명 자료 [예시: 제조공정도, 작업	 실제 제조 여부(지시자, 작업자, 작업부서) 확인 공정내역, 가공순서, 제조 일자, 불인정공정 이상 공정 수행 여부 확인 	수 있는 자료제출 요청
생산단계	• 원재료 내역 증빙자료 [에시: BOM, 철강재의 경우 Mill Sheet 등]	 원재료의 부품번호(코드), 용명, 규격, 소요함, 공급처 원산지, HS 등 확인 제조공정도와의 연계성 확인 	내역을 증빙할 자료제출 요청
	· 조시대상물품 생산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EFP시스템 출력자료]	 원재료의 입출고 내역, 소요량 확인 생산증빙과의 일치성 확인 	과 관련된 회계 증빙
	• 임가공 증빙자료 [에시: 임가공거래계약서, 작업지시서, 임가공비	(1977 1977)	• 임기공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빙자료 제출 요청

ㅇ 문구 수정

현 행	 개 정 안	비고
ਹ ਨੇ 	/비 '	71 25
[별표 2]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개 정>	[별표 2]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시유 및 확인할 시항 정의시항 지불증빙, 납풍서, 국내 제조확인서 등] • 유상사금 증빙자료 [예시: 구매전표, 구매원장 매입처원장, 매출전표, 판매원장, 수불부 등] • 무상사금 증빙자료 [예샤: 임기공비 전표 등] • 이소기준 홍족 여부 중빙자료 증빙자료 중빙자료 정왕의 적정성 여부 확인 우 이소기준비율 산출	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절의사항 지불증빙, 납풍서, 국내 제조확인서 등] • 유상사금 증빙자료 [에서: 구매전표, 구매원장 매입처원장, 매출전표, 판매원장, 구불부 등] • 무상사금 증빙자료 [에서: 임기공비 전표 등] • 미소기준 충족 여부 ■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 미소기준을 적용한 경 증빙자료 적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 우 미소기준비율 산출	ㅇ 문구 수정
[에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중앙이 기재된 BCM, 계산내역 등]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 등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시실, •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중빙자료 제출 요청 등 확인 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관광 물운송장(AWB), 포장 맹세서(Packing List), 검역증, 대금영수증빙 (신용장 등)]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증빙자료 [에시: 원산지증명서 • 작성대장, 원산지소명서, 서명카드] •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 [에시: 매출전표(AF), 판매원장, ERP시스템 출력자료]	[에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중령이 기재된 BCM, 계산내역 등] * 조시대상물품의 판매 * 조시대상물품의 판매시선 한 조시대상물품 판매 관련 중빙자료 제출 요청 * 조시대상물품의 판매 * 조시대상물품의 판매시선 한 조시대상물품 판매 관련 중빙자료 제출 요청 [에시: 계약서, 수출신고 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 포장명세서(Packing Lid), 검역증, 대금영수증빙(신용장 등)] * 조시대상물품의 원산지증명서 * 조시대상물품의 원산지증병자료 이에지: 원산지증명서 * 확인 * 조시대상물품의 원산지증명서 * 작성대장, 원산지증명서 * 작성대장, 원산지소명서, 서명카드] * 조시대상물품 판매 관련회계 당시자료 등이 한 관시대상물품의 판매 관련회계 증빙자료 이에지: 매출전표(AF), 판매원장, ERP시스템 출력자료]	

현 정 안 행 개 비 고 [별표 2]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별표 2]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개 정> ㅇ 문구 수정 4. 역내가치기준(부가가치기준) 4. 역내가치기준(부가가치기준)

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 원재료의 구매처 확인 ■ 원재료의 가격 확인	▶ 원재료 구매 <u>자료제출</u> 요청
	(Packing List), 대급지금 자료 등] • 원재료의 원산자증빙자료 [에지: 원산자증명서(CX)]]	■ 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관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원재료의 원신지증빙자 료 제출 요청
원재료 구매단계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 원재료의 구매처(원산지) 확인 원재료의 품목분류(HS) 부호 확인	제출 요청
	[예시: 원산지확인서, 국 내제조확인서]	regressioners the concentration when	제출 요청
	증빙자료	■ BOM의 정확성 확인 ■ 구매증빙자료와의 일치성 (구매목록 공급처 등)확인	
	• 제조 공정 설명 자료 [예시: 제조공정도, 작업 지시서, 공정이동표]	 실제 제조 여부(지시자, 작업자, 작업부서) 확인 공정내역, 가공순서, 제조 일자, 불인정공정 이상 공정 수행 여부 확인 	수 있는 자료제출 요청
	• 원재료 내역 증빙자료 [예시: BOM, 철강재의 경우 Mill Sheet 등]	원재료의 부품번호(코드), 평명, 규칙, 소요량, 공급처, 원산지, HS 등 확인 제조공정도와의 연계성 확인	
생산단계	회계 증빙자료 [예시: 원재료/제품수불부,	 원재료의 입출고 내역, 소요랑, 금액(단가) 확인 생산증빙과의 일치성 확인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가격의 정확성 확인 	과 관련된 회계 증빙 자료 제출 요청
	• 임가공 증빙자료 [예시: 임가공거래계약서, 작업지시서, 임가공비		▶ 임가공에 해당하는 경 우 그 증빙자료 제출 요청

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에사 계약서 수입신교필증, 송품경(Invoice), 선하증 권(EVL), 포장맹세서 (Packing List), 대금지금 자료 등] • 원재료의 원선자증빙자료	■ 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관	요청
원재료 구매단계	[에시: 계약서, 거래평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납풍서, 입고증, 기납증, 분증, 내국신용장 등] - 원재료의 원산자흥빙자료 [에시: 원산지확인서, 국	■ 원재료의 품목분류(HS)	제출 요청
	증빙자료	■ BOM의 정확성 확인 ■ 구매증빙자료와의 일치성 (구매목록, 공급처 등)확인	
		 실제 제조 여부(지시자, 작업자, 작업부서) 확인 공정내역, 가공순서, 제조 일자, 불인정공정 이상 공정 수행 여부 확인 	수 있는 자료제출 요청
		 원재료의 부품번호(코드), 평광, 규격, 소요랑, 공급처, 원산지, HS 등 확인 제조공정도와의 연계성 확인 	
생산단계	회계 증빙자료 [예시: 원재료/제품수불투	원재료의 입출고 내역, 소요함, 금액(단가) 확인 생산증빙과의 일치성 확인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가격의 정확성 확인	과 관련된 회계 증빙 자료 제출 요청
	• 임가공 증빙자료 [예시: 임가공거래계약서, 작업지시서, 임가공비		▶ 임가공에 해당하는 경 우 그 중빙자료 제출 요청

	 현	 행				정 안		비	고
					· ·				
[별표	2] 원산지조시	나 표준 요구	자료 목록표	[별표	2] 원산지조	사 표준 요구	자료 목록표		
<7	· 정>								
	1 0,								
구 분	요구자료명	근 가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ㅇ 문구 수정	
	지불증빙, 납품서, 국내 제조확인서 등]		_		지불증빙, 납품서, 국내 제조확인서 등]				
	• 유상사금 증빙자료				· 유상사금 증빙자료				
	[예시: 구매전표, 구매원장, 매입처원장, 매출전표,				[예시: 구매전표, 구매원장,				
	판매원장, 수불부 등]				매입처원장, 매출전표, 판매원장,수불부 등]				
	・ 무상사금 증빙자료 [예시: 임가공비 전표 등]				• 무상사금 증빙자료				
	[MAI: 9194 GT 91				[에시: 임가공비 전표 등]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 ■ 증빙자료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사실, 판매처, 품명·규격·HS				■ 조사대상물품의 판매시실,			
		등 확인	2 00MH ME 40		증빙자료 [예시: 계약서, 수출신고	판매처, 품명·규격·HS 등 확인	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		
	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항공화				필증, 송품장(Invoice),				
	물운송장(AWB), 포장명				선하증권(B/L), 항공화 물운송장(AWB), 포장명				
	세서(Packing List), 검				세서(Packing List), 검				
	역중, 대금영수증빙(신 용장 등)]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		역중, 대금영수증빙(신 용장 등)]	■ 조사대상물품의 원산지,	▶ 조시대산물품의 원산 -		
		기록보관규정 준수 여부			· 조사대상물품의 원산지	1			
판매단계	기준 충족 증빙자료 [예시: 역내가치산출표,	확인	제출 요청	판매단계	기준 충족 증빙자료 [예시: 역내가치산출표	확인	제출 요청		
	원산지증명서 · 작성대 장,				원산지증명서 · <u>작성대 장</u>				
	원산지소명서, 서명카드] • •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판매증빙과의 일치성 확인 (판매목록 단기, 판매처 등)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 와 관련된 회계 증빙자			■ 판매증빙과의 일치성 확인			
	회계 증빙자료	124112440	료 제출 요청		 조사대상물품 판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 	(판매목록 단가, 판매처 등)	와 관련된 회계 증빙자 료 제출 요청		
	[예시: 매출전표(A/P), 판 매원장, 판매부대비용전				[예시: 매출전표(A/R), 판				
	표(운임・보험료・통관수				매원장, 판매부대비용전 표(운임·보험료·통관수				
	수료), 표준원가정책, 실				수료), 표준원가정책, 실				
	제원가결산자료, ERP 시 스템 출력자료]				제원가결산자료, ERP 시 스템 출력자료]				
							<u> </u>		

혅 햀 개 정 아 刊 \mathcal{I} [별표 2]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 [별표 2]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개 정> 5. 가공공정기준 요구자료 ㅇ 문구 수정 5. 가공공정기준 요구자료 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핫 구부 요구차류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공정 별 원재료 구매 ■ 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 ▶ 공정별 원재료 구매 증 공정 별 원재 료 구매 ■ 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 ▶ 공정별 원재료 구매 증 증빙자료 ■ 원재료의 구매처 확인 빙자료 제출 요청 증빙자료 ■ 원재료의 구매처 확인 빙자료 제출 요청 [예시: 거래명세표, 원재료 • 원재료의 품명, 규격, 수 [예시: 거래명세표, 원재료 • 원재료의 품명, 규격, 수 수불부, 발주서, 원단 량 확인 수불부, 발주서, 원단 랑확인 재고목록, 인수증, 닡 재고목록, 인수증, 넵 품명세서, 재고관리대장, 품명세서, 재고관리대장, 생산관리대장] 생산관리대장] 원재료의 원신지, 기록보 ▶ 원재료의 원신지증빙자료 원재료의 원산자증빙자료 원재료의 원산자증방자료 ■ 원재료의 원산자 기록보 ▶ 원재료의 원산자증빙자료 [에지: 원산지증명서(C/O)] 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 제출 요청 제출 요청 [예시: 원신지증명서(C/O)] 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 원사(Yam)의 원산지 및 ■ 원사기준 원산지판정방 ▶ 원사(Yam)의 원산지 • 원사(Yam)의 원산지 및 ■ 원사기준 원산지판정방 ▶ 원사(Yam)의 원산지 구매 증빙자료 식(Yarn-forward)일 경 잋 구매 증빙자료 제출 구매 증빙자료 식(Yarn-forward)일 경 및 구매 증빙자료 제출 [예시: 원산지확인서, 구 우. 원재료인 원사의 원 우, 원재료인 원사의 원 [에시: 원산지확인서, 구 원재료 매 관련 자료(거래명세서, 산지 확인 매 관련 자료(거래명세서, 산지 확인 원재료 세금계산서 등)] 구매단계 구매단계 세금계산서 등)] 직물(Fabric)의 원산자 및 ■ 직물기준 원산지판정방 ▶ 직물(Fabric)의 원산지 직물(Fatric)의 원선자 및 ■ 직물기준 원산지판정방 ▶ 직물(Fabric)의 원산지 구매 증빙자료 식(Fabric-forward)일 경 및 구매 증빙자료 제출 구매 증빙자료 및 구매 증빙자료 제출 식(Fabric-forward)일 경 [예시: 원산지확인서, 구 우, 원재료인 직물(원 요청 우, 원재료인 직물(원 [예시: 원산지확인서, 구 요청 매 관련 자료(거래명세서, 단)의 원산지 확인 매 관련 자료(거래명세서, 단)의 원산지 확인 세금계산서 등)] 세금계산서 등)] 재단·봉제(Cut and sew) ■ 재단·봉제기준 원산 ▶ 직물(Fabric)의 원산지 재단·봉제(Cut and sew) ■ 재단·봉제기준 원산 ▶ 직물(Fabric)의 원산지 공정을 위한 원재료의 원 지판정방식(Cut and 잋 구매 증빙자료 제출 공정을 위한 원재료의 원 지판정방식(Cut 및 구매 증빙자료 제출 sew)일 경우, 원재료인 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sew)일 경우, 원재료인 요첫 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작물(원단)의 원산자 [에시: 원산지확인서, 구 [예시: 원산지확인서, 구 직물(원단)의 원산지 매 관련 자료(거래명세서, 환인 매 관련 자료(거래명세서, 2101 세금계산서 등)] 세금계산서 등)] 원재료 내역 증빙자료 ■ 원재료의 부품번호(코 ▶ 조사대상물품의 원재료 원재료의 부품번호(코 ▶ 검증대상물품의 원재료 원재료 내역 증빙자료 [에시: BOM] 드), 품명, 규격, 소요량, 내역을 증빙할 자료제출 [예시: BOM] 드), 품명, 규격, 소요량, 내역을 증빙할 자료제출 생산단계 공급처, 원산지, HS 등 생산단계 공급체, 원산지, HS 등 요청 요청 ■ 제조공정도와의 연계 ■ 제조공정도와의 연계 성 확인 성 확인 · 가공공정별 설명 자료 🏮 공정의 순서 및 충분 기 • 가공공정의 개괄적 설 · 가공공정별 설명 자료 🏮 공정의 순서 및 충분 가 🕨 가공공정의 개괄적 설 [예시: 생산공정도(Flow 공 여부 확인 명 자료 요청 [예시: 생산공정도(Flow 공 여부 확인 명 자료 요청 생산단계 생산단계 Chart), 공정설명서, 공정 ■ 공정 수행 지역, 수행자 ▶ 공정의 각 단계별 수 Chart), 공정설명서, 공정 ■ 공정 수행 지역, 수행자 ■ 공정의 각 단계별 수 사진, 국내제조확인서, (생산자) 확인 행주체(업체) 설명자료 사진, 국내제조확인서, (생산자) 확인 행주체(업체) 설명자료

현 행	개 정 안	비고
т о	/ II 8 E	
[별표 2]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별표 2]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개 정>		
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ㅇ 문구 수정
작업지시서, 생산일지, ■ 투입된 원재료와 생산 요청	작업지시서, 생산일지, ■ 투입된 원재료와 생산 요청	
생산관리대장, 입출고· 된 상품의 규격·수량의 적 ▶ 원재료와 생산량의 적정	생산관리대장, 입출고· 된 상품의 규격·수형의 적 ▶ 원재료와 생산량의 적정	
재고관리대장] 정성 확인 성 확인자료 요청	재고관리대장] 정성 확인 성 확인지료 요청	
· 임기공 증빙자료 ■ 임기공, 외주가공이 있을 ▶ 임기공, 외주기공이 있었	· 임가공 중빙자료 ■ 임가공, 외주가공이 있을 ▶ 임가공, 외주가공이 있었	
[예시: 임기공거래계약서, 경우, 실제 생산주체 확인 을 경우 계약 및 거래	[에시: 임기공거례계약서, 경우,실제 생산주체 확인 을 경우 계약 및 거래	
작업지시서, 임가공비 중빙자료 제출 요청	작업지시서, 임가공비 중빙자료 제출 요청	
지불증빙, 납풍서, 국내	지불증빙, 납품서, 국내	
제조확인서 등]	제조확인서 등]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사실 ■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	· 조사대상물품의 판매 · 조사대상물품의 판매사실 · 조사대상물품 판매 관	
증빙자료 팬(채, 품명·규격·H6 등 현 증빙자료 제출 요	증빙자료 팬에서, 품명·규격·H6 등 현 증빙자료 제출 요	
[에시: 계약서, 수출신고 확인 청	[에시: 계약서, 수출신고 확인 청	
필증, 송품정(Invoice),	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AL), 항공화	<u>선화중권(BAL)</u> , 항공화 물운송장(AWB), 포장명	
물운송장(AWE), 포장명 세서(Packing List), 대금	세서(Packing List), 대급	
영수증빙(신용장 등)]	영수중빙(신용장 등)]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 조사대상물품의 원산지 • 조사대상물품의 원산지,	
판매단계 중빙자료 기록보관규정 준수 여부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	판매단계 중빙자료 기록보관규정 준수 여부 ▶ 조시대상물품의 원산	
[에시: 원산지증명서 · 확인 지증빙자료 제출 요청	[에시: 원산지증명서・] 확인 <u>지증빙자료</u> 제출 요청 의 작성대장, 원산지소명서	
작성대장, 원산지소명서, 서명카드] • 판매증빙과의 일치성 확인	적용대명, 현단시대명사, 서명카드] ■ 판매증빙과의 일치성 확인	
·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판매목록 단), 판매처 등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	· <u>조시대상물품</u> 판매 관련 (판매목록 단기, 판매처 등) ▶ <u>조시대상물품의</u> 판매	
회계 증빙자료 와 관련된 회계 증빙	회계 증빙자료 와 관련된 회계 증빙	
[예시: 매출전표(A/R), 자료 제출 요청	[예시: 매출전표(A/R), 자료 제출 요청	
판매원장, ERP시스템	판매원장, ERP시스템	
출력자료]	출력자료]	

	현	행		개 정 안	비	卫
[별지 <개 ⁷		보분석 계획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정보분석 계획보고서		
문서(관리)번호:	정보분석 계획	보고서 ^{보고일자:}	문서(관리)번호:	정보분석 계획보고서	ㅇ 신규 '	발효 협정 추가
① 개 요			① 개요			
분석 과제명			분석 과제명			
정보출처	□체약상대국 제공(수졸업검증) □탈루 □본청지시 □타원산지검증부서 제공 제공 □납세심사부서제공 □선별시스템	□통관부서 급 2214급	정보줄처	□체약상대국 제공(수출입검증) □탈루제보 □먼론보도 □본정지시 □타원산지검증부서 제공 □통관부서 제공 □납세심사부서제공 □선별시스템 □자체수집 □기타		
협정구분	□자체수집 □기타 (FTA) □원래 □싱가본로 □BFTA □기 □호주 □케나다 □중국 □케트남 (일반특체) □남국교역 □APTA □SSP	□뉴질랜드	협정구분	(FTA) 그렇게 그성가포로 CEFTA 그어데한 그만도 CBU 그데루 C미국 (FTA) 그렇게 그성가포로 CEFTA 그어데한 그만도 CBU 그데루 C미국 (FTA) 그렇지 그성주 C게내다 그중국 그베르남 그뉴질랜드 (플롬비아) (일반특혜) 그남국교역 (APTA CISSP CISSTP (ITNDC D최번국 그기타		
	(비록해) □비록해			(비득혜) [비득혜		
검증구분	<u> </u>		검증구분	□수출물품 □수입물품	4	
② 착안사항/우	위 <mark>험요소</mark>		② 착안사항/위	and a superior of the superior		
착안사항	 본청지시/타원산지검증부서/통관학 	언론보도 내용 서/남세십자부서 제공 정보내용 자체수집 정보내용	착안사항	○ 체약상대국 제공 정보내용 ○ 탈루제보 내용 ○ 본청자시(타원산자검증부처/동관부처/남채침사부서 제공 정보내용 ○ 선병시스템 정보내용 ○ 사체수집 정보내용		
위험요소	 작안사항에 따른 위험요소를 상세 	히 서슬(원산지 위험지표 참조)	위험요소	o 착안사항에 따른 위험요소를 상제히 서술(원산지 위험지표 참조)		
③ 분석방법			③ 분석방법	The selection of the choice for the conditional processor is a post development of the protection of the conditional for the c		
④ 분석(예상)7	기간: <u>20 ~ 20</u>		④ 분석(예상) ²	기간 : <u>20 ~ 20</u>	Ī	
③ 작성자			⑤ 작성자			
원산지조사팀	1. (기여도 %) 2. (기여도 %)	3, (기역도 %) 4, (기역도 %)	원산지조사팀	1. (기여도 %) 3. (기여도 %) 2. (기여도 %) 4. (기여도 %)		
첨부파일 : 스캔피	과일		첨부파일 : 스캔	파일		

		현			행					개	정	Ç	간					ŀ	1]	고	
[별지 7		호서식] 원	산지	조사	계획	보고서	[별지 저]]12호	[서식]	원/	산지.	조시	- 계	획년	빈고서					
<개 정	>																				
문서(관리)번호:	ş	원산지	조사	계획	보고서	<u>보고</u> 일자:	10 10 10	문서(관리)번호:	£	일산지	조사	계획	보고	서 ^{보고일}	가:		0	신규	발효	협정 추	-フ}
① 조사 개요	FTA	□칠레 □2	일기포르 [EFTA	P세안 □인도	. ŒU 🗗	페루 □미국	① 조사 개요		□칠레 □	1가주로 ㄷ	FFTA F	D14101-F	1915 LIB	(루디미국					
협정구분	일반특혜 비특혜	□남묵교역			마토남 	뉴질랜드		협정구분	FTA 일반특혜	그렇게 그로 그렇게 그로 그렇게 그렇	E주 □케니 영국 □RCE	다 □중국 P □캄보	다아 🗅	孝 □뉴질록 스라엘 □	번드 []]인도네/	물름비아 시아					
		를 □수입물품				*************			7250E #8	□비투혜		nananananan		skrænænænænæ							
검증구분		S □국제검증 S □현지검증		대국 확인	요청			검증구분	□국내검증	: □수입물품 : □국제검증 : □현지검증		ru -2 - 3 1.0	10.24								
대상국가								대 상국 가	Lrises	LUEARO	Lni H-8	भान चार	H-8			-					
② <mark>대상자</mark>		체약상대국						② 대상자	<u> </u>												
대상자 구분			맹산자 🗗	원산지증빙	서류 발급기국			대상자 구분		제약상대국											
업체명				<u>연</u> ₹	☎ 락처 Fa	x :() -	업체명	<u>니수입사</u> [□수들자 □	9산사 니	2산시공명	서류 말	22	()	-: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28			하나난	e- 립일자	mail:	@	사업자번호				연	각처	Fax : e-mail:		20					
해외공급자부호					유부호			대표가 성명 해외공급자부호				50000000	립일자	3							
업종/업태 소 재 지	0			회사	규모 기	H본급, 매음	줄어 등	에 의송급사무호 업종/업태 소 재 지					유부호 규 모	자본금	h, 메플 ⁽	책 등					
	구분	품명 (HS코드)	- 155	배년도 근애(최종)	전년도 거스 근앤		전전년도 수 금액(천물)		구분	품명		개년도 그래		년도		[전년도 					
수줄입실적 (주요등등)	수줄	(113 112.	. 121			KEE C	I B NCEZ	수풀 입실객 (주요등록)	수출	(HS코드)	선수	금액(청음	선수	금액(청홍) 선수	금액(왕홍)					
(T#8#/	수입		12 23		32		\$ \$	(+754)	수입												
주요거래처			No		. VS	500		주요거래처								98					
③ 조사 대상물	<u>'</u> 품							③ 조사 대상물	* *												
품명/규격	품명 -	규격/모델	HS번호	원산지	수줄자(생산)	자 금액 (천물)	예상추징액 (천만원)	품명/규격	품명 -	규격/모델	HS번호	원산지	수풀자/	병산자 (금액 천물)	예상추징역 (천만원)					
		2 d																			

현 행	개 정 안	비고
[별지 제13호서식]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 (수출/수입) <개 정>	[별지 제13호서식]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 (수출/수입) ## ## ## ## ## ## ## ## ## ## ## ## ##	비 고 ○ 조사기간 및 자료제출 기한 명확화
1. (수입물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고자 통지하오니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물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고자 통지하오니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귀사가 천재지변・화재발생・노사분규 등으로 사업상 심한 곤란에 처하거나 조사를 받기 곤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30일의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귀사가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및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추징)하거나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리, 귀사는 같은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변호사,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불임: 1. 자료제출 연기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끝. 면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지점	(수출물품) 「자료의 제공이어 구시가 마입니다. (수출물품) 「자료의 제공기원에서 자료을 제공하여 구시가 마입니다. (수출물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고자 통지하오니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2. 만약 귀사가 참재지변·화재발생·노사분규 등으로 사업상 심한 곤란에 처하거나 조사를 받기 곤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30일의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귀사가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및 제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추장)하거나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리, 귀사는 같은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변호사,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수입물품)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증방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만하거나 추가로 확인함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접검증)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추가 조사가진행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사실 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간접검증) 체약상대국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의한 사실 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불임: 1. 자료제출 연기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끝. ① ○ 세 관 장 직인	

현 행	개 정 안	비고
[별지 제14호서식]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서 <개 정>	[별지 제14호서식]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서	
행 정 기 관 명 <i>ண.คs</i> s	행정기관명	ㅇ 공문 양식 현행화
수신자 (경유) 제목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서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불임1과 같이 원산지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2. 아울러 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임2의 양식으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수신자 (경유) 제목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서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붙임1과 같이 원산지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2. 아울러 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붙임2의 양식으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드립니다. 불임 1. 원산지증빙자료 제출요청 목록표 1부. 2. 자료제출 연기신청서 1부. 끝.	문임 1, 원산지증빙자료 제출요청 목록표 1부. 2, 자료제줄 연기신청서 1부, 끝. ○ ○ 세 관 장	
○ ○ 세 관 장 지만자: 작하(작곡) 서월 급료자 작하(작곡) 서월 급교자 전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작위(작급) 서명 작위(작급) 서명 작위(작급) 서명 가약자 참보자 참여될지 점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되었다. 기약자 최근 기약자 기약	

혅 햀 정 아 刖 $\overline{\mathcal{I}}$ 제24호서식] 본청 대표 서한문 [별지 제24호서식] 본청 대표 서한문 <개 정> ㅇ 영문 표현 개정 Government Complex Daeleon Government Complex Daeleon 189 Chungaa-ro, Sen-gu, Daeleon, 35208 189 Chungsa-ro, Seo-gu, Daejeon, 35208, Korea Korea Customs Service Republic of Korea Tel.: (82-42) 481-3218 Fax: 481-3239 KOREA CUSTOMS SERVICE verification @customs.go.kr / www.customs.go.kr Dear Mr. OO/ Ms. OO, (E Dear Sir or Madam.) Korea Customs Service (KCS) sends the result of origin verification. Korea Customs Service (KCS) sends the result of origin verification. Please refer to the attachment for details and send your authority's determination to the contact point stated below. Please refer to the enclosure for details and send your authority's determination to the contact point stated below. Origin Verification Division Korea Customs Service (KCS) Origin Verification Division Government Complex Daejeon Korea Customs Service (KCS) 189 Chungsa-ro, Seo-gu, Daejeon Government Complex Daejeon Postal code, 35208 189 Chungsa-ro, Seo-gu, Daeieon Tel. +82 42 481 3218 Postal code 35208 e-mail: verification@customs.go.kr Tel. +82 42 481 3218 e-mail: verification@customs.go.kr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KCS will look forward to your reply KCS will look forward to your reply Best regards. Best regards, (Mr.) (Mr.) Director Director Origin Verification Division Origin Verification Division Korea Customs Service (KCS) Korea Customs Service (KCS) Government Complex Daejeon Government Complex Daejeon 189 Chungsa-ro, Seo-gu, Daejeon 189 Chungsa-ro, Seo-gu, Daejeon Postal code, 35208 Postal code, 35208 Tel. +82 42 481 3218 Tel. +82 42 481 3218 e-mail: verification@customs.go.kr e-mail: verification@customs.go.kr Enclosure : Origin verification result of customs authority of Korea <Attachment> Origin verification result of customs authority of Korea

혅 했 정 아 ĦJ \overline{J} [별지 제25호서식]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별지 제25호서식]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문 <개 정> 결과 영문 회신문 ㅇ 영문 표현 개정 세과 역부 주시 Government Complex Daeleon 189 Chungsa-ro, Seo-gu, Daeleon, 35208, Korea Korea Customs Service Tel.: (82-42) 481-3218 Fax: 481-3239 (Tel) +32- - - (Fax) +32- - -KOREA CUSTOMS SERVICE verification @customs.go.kr / www.customs.go.kr 기관 e-mail 주소. 홈페이지 URL 주소 MM DD YYYY MM DD YYYY 상대국 재관 주소 상대국 세과 주소 Tel: (+00) 00 0000000 E-mail: 0000000@00000.000 Tel: (+00) 00 0000000 E-mail: 0000000@00000.000 Your reference No.:0000(dated mm.dd.vvvv) KCS's reference No.: KCS-E-00-0000 Your reference No.:0000(dated mm.dd.yyyy) Subject: Notification of Verification Results KCS's reference No.: KCS-E-00-0000 Exporter: Origin Declarations No.: Subject: Notification of Ventication Results Exporter: Origin Declarations No.: Dear Mr. OO/ Ms. OO, (To whom it may concern.) Dear 0000(To whom it may concern.) Pursuant to Article 27 of the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of the Korea-EU Free Pursuant to Article 27 of Origin Protocol under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Trade Agreement, the Korea Customs Service (KCS) provides your authority Korea Customs Service (KCS) is to inform you of the result of the verification with the result of the origin verification conducted by competent regional performed by competent regional customs. Detailed result generated from the customs as follows: verification is as follows: The origin declaration(s) concerned was(were) duly and legitimately issued. The exporter(s) acquired the approved exporter status (Customs Authorization The Origin Declarations in question were duly and legitimately issued. The exporter was certified as an Approved Exporter (Customs Authorization No. 000-00-000000) on MM DD. YYYY No. s 000-00-000000, 000-00-000000 and 000-00-000000) on Month DD. by OO Main Customs under the Korea-EU FTA. YYYY through OO (Main) Customs in accordance with the Korea-EU FTA. The product(s) in question was(were) manufactured in Korea, and sufficiently The products in question were manufactured in Korea, and sufficient workings were worked or processed in Korea. The product(s) also satisfies(satisfy) the undertaken. Furthermore, the products satisfy its origin criterion stipulated in Annex II of orisin criteria(criteria) stipulated in Annex II of the aforementioned Orisin the Origin Protocol. Thus, the products are considered as Korea-originating, Protocol. Thus, the product(s) is(ar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Korea.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the content above, please do not Should you have any queries regarding the above-mentioned content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hesitate to contact us. Sincerely yours, Sincerely yours, (Mr.) 000, 000-000 (Mr.) 000, 000-000 Director Director 000 Division OOO Division 000 Main Customs Service 0 0 0 Main Customs Service

현	행	개 정 안	비고
<신 설 >		[별지 제35호의2서식] 협정관세 적용 보류 만료통지서 (3 통지대상자 상호 대표자 중소 사업자동택한 (제인사업자의 경우 경단론임) (3 원산지조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임임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3 대상물품 품명/규격 등명 규격/모델 대S번호 원산지 수출재/명산자 작용 보류 통지번호 적용 보류 등지번호 적용 보류 기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21조제(항 및 동법 시행명 제17조제(항에 따라 통지한 협정관세 적용 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협정관세 적용 보류 만 료통지서 신설

현 행	개 정 안	비고
[별지 제36호서식]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별지 제36호서식]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본청 대표 서한문 <개 정>	본청 대표 서한문	
	Government Complex Daeleon	ㅇ 영문 표현 개정
Government Complex Daejeon 189 Chungsa-ro, Seo-gu, Daejeon, 35208, Korea Tel.: (82-42) 481-3218 Fax: 481-3239 verification @customs.go.kr / www.customs.go.kr	Korea Customs Service 139 Chungaa-ro. Ceo-gi. Daelean. 85000 Republic of Korea Tel.: +82-42-431-8213 / Fax: +02-42-431-7761 xerification@ korea.lsr. www.customa.go.lsr	ㅇ 8년 표현 개명
MM DD. YYYY	MM DD, YYYY	
Korea Customs Service (KCS) requests your authority to conduct origin	Dear Mr. OO/ Ms. OO, (또는 Dear Sir or Madam,)	
verification.	Korea Customs Service (KCS) kindly requests your authority to conduct origin	
Please refer to the attachment for details, and send verification result to the	verification.	
following address.		
Origin Verification Division	Please refer to the enclosure for details, and send verification result to the following address.	
Korea Customs Service (KCS)		
Government Complex Daejeon	Origin Verification Division	
189 Chungsa-ro, Seo-gu, Daejeon	Korea Customs Service (KCS) Government Complex Daejeon	
Postal code, 35208	189 Chungsa-ro, Seo-gu, Daejeon	
Tel. +82 42 481 3218	Postal code. 35208	
e-mail: verification@oustoms.go,kr	Tel. +82 42 481 3218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e-mail : verification@customs.go.kr	
KCS will look forward to your reply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Best regards,	KCS will look forward to your reply	
(Mr.)	Best regards,	
Director	(Mr.)	
Origin Verification Division	Director	
Korea Customs Service (KCS)	Origin Verification Division	
Government Complex Daejeon	Korea Customs Service (KCS)	
189 Chungsa-ro, Seo-gu, Daejeon	Government Complex Daejeon	
Postal code, 35208	189 Chungsa-ro, Seo-gu, Daeleon	
Tel. +82 42 481 3218	Postal code. 35208 Tel. +82 42 481 3218	
e-mail: verification@austoms.go.kr	e-mail: verification@customs.go.kr	
< Attachment> Verification request letter from a customs authority of Korea	Enclosure: Verification request letter from a customs authority of Korea	

혅 했 정 항 нJ \overline{J} [별지 제37호서식]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별지 제37호서식]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요청 서한문 및 질문서 <개 정> 요청 서한문 및 질문서 세명 중 주소 ○ 영문 표현 개정 Government Complex Daeleon 189 Chungsa-ro, Seo-gu, Daejeon, 35208, Korea Korea Customs Service (Tel) +82- - - (Fax) +82- - -Tel.: (82-42) 481-8218 Fax.: 481-8289 KOREA CUSTOMS SERVICE verification @customs.go.kr / www.customs.go.kr 기관 e-mail 주소, 홈페이지 URL 주소 MM DD YYYY MM DD.YYYY 상대국 세과 주소 상대국 세취 주소 Our reference No.: KCS-I-YYYY-0000 Our reference No.: KCS-I-YYYY-0000 Subject: Subsequent Verification of proofs of origin Subject: Subsequent Verification of proofs of origin Exporter: 000000 Exporter: 000000 Importer: 0000000 Importer: 0000000 Origin Declaration No.: 00000, 00000, 00000 and 00000 - Origin Declaration No.: 00000, 00000, 00000 and 00000 Or Origin Declaration No: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list. Or Origin Declaration No.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list. (여러 건이거나, 상세대역인 경우 불입 목록으로 첨부 가능) (여러 전이거나, 상세내역인 경우 불임 목록으로 첨부 가능) Dear 00000 (or Dear Sir or Madam). Dear 0,0000 (or Dear Sir or Madam). Pursuant to Article 27 of the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ursuant to Article 27 of the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Korea Customs Service (KCS) kindly requests your the other part. Korea Customs Service (KCS) requests your authority to carry out authority to carry out subsequent verification on the authenticity and accuracy of subsequent verification on the authenticity and accuracy of enclosed origin supporting enclosed origin supporting documents. documents. 필요시) Korea Customs Service (KCS) is verifying whether 000 (会會자명) located in (필요시) Korea Customs Service (KCS) is verifying whether EDWARDS SRO located in your country legitimately applied for the preference with the certificates of origin your country had legitimately applied for preference regarding certificates of origin issued issued for the product(s) in question exported from Month DD. YYYY to Month DD.

for products exported from MM DD, YYYY to MM DD, YYYY.

KCS has reasonable doubts as to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products and the validity of Customs Authorization Number for the following reasons

- < 칼리적 의실 사유 기계 (비병사용 문구에서 선택) >
- 1. 인증수출자 지위 유효성 의실
- 2. 위산기기준 충족 여부 의실
- 3. 형식적 요건 의심
- 4. 기타 합리적 의심 사위

Therefore, KCS requests your authority to verify the followings.

- 1. Did the exporter obtain approved exporter status under the Korea-EU FTA? - (필요시) Please let KCS informed of the date when the approved exporter status was
- granted.
- 2. Was (Were) the origin declaration(s) subject to verification duly and legitimately issued by an approved exporter pursuant to Article 16, 17 of the Origin Protocol under the

MCS has reasonable doubt about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product(s) in question and the validity of the exporter(s) customs authorization number(s) for the following

- < 합리적 의심 사유 기재 (변범사용 문구에서 선택) >
- 1 인증수충자 지위 유효생 의실
- 2. 위산자기준 충족 여부 의실
- 3. 정식적 요귀 의실
- 4. 기타 한리적 의심 사유

Therefore, KCS requests your authority to verify the followings.

- 1. Did the exporter obtain approved exporter status under the Korea-EU FTA?
- (원유시). Please let us know the date when the approved exporter status was granted to the exporter in question.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지 제37호서식] 국제 원산지 간접조	[별지 제37호서식] 국제 원산지 간접조	
나 요청 서한문 및 질문서 <개 정>	사 요처 서하무 및 질무서	
7 L 0 7 L L X E L 7 1 1 0 7	7	
		ㅇ 영문 표현 개정
Korea-EU FTA?	2. Was (Were) the origin declaration(s) subject to verification duly and legitimately	
3. Is the customs authorisation number (00/000/00/0000) valid?	issued by an approved exporter pursuant to Article 16, 17 of the Origin Protocol under the Karea-EU FTA?	
4. Do the products concerned fulfill origin criteria stipulated in Annex 2 and Article 5, 6 of the Origin Protocol under the Korea-EU FTA? Also, do the products satisfy all the other	3. Is(are) the customs authorization number(s) (00, 00, and 00) valid?	
requirements of the Origin Protocol?	4. Do(es) the product(s) concerned fulfill origin criteria stipulated in Annex 2 and Article(s) 5 and 6 of the Origin Protocol of the Korea-EU F.TA? Do(es) the	
(필요시) Considering the burden on origin verification. KCS requests your country to conduct origin verification on only 00 C/Os selected out of 000 C/Os as typical types	product(s) satisfy the other requirements of the Origin Protocol?	
(Please refer to the attachment). In addition, KCS informs that whethe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ill be granted to all C/Os classified as the typical types wi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your country's verification result.	(필요시) Considering your workload for the requested origin verification. KCS chose 00. C/Os from a total of 00 as representative samples by spec for the product(s) in question (See Attachment 00). If your authority performs origin verification on them and sends us the results, we will apply them to all C/Os in line with your	
Preferential treatment will be denied if a satisfactory reply is not delivered within 10 months from the date of this letter. Please note that reply period expires on MM DD.	determination. According to Article OO of the Korea-EU FTA,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YYYY (회선기한).	importing party shall refuse entitlement to the preference if there is no reply within 00 month(s)/00 year(s) of the date of the verification request or if the reply does not	
(필요시) It will be highly appreciated if your authority notifies KCS of delivery of this letter.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in question or the real origin of the products. Therefore, we give you a gentle reminder to send us your reply by Month DD, YYYY.	
KCS will look forward to your reply.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필요시) We would appreciate it if you acknowledge receipt of this letter.	
The second secon	We look forward to your reply an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operation.	
Sincerely yours.	Sincerely yours.	
(서명)	(서명)	
(Mr./Mc.) 000(성. 대분자 표기), 00000 (이름) Director	(Mr/Ma.) Director	
FTA Management Section 0 000 Customs	0.0.0 Division 0.0.0 Main Customs Service	
Enclosed: 1. List of 00 Origin Declarations subject to verification	Enclosures:	
2. Copies of 00 Origin Declarations 3. Copy of Certificate of Approved Exporter	A List of 00 Origin Declarations Subject to Verification Copies of 00 Origin Declarations Copy of Certificate Approved Exporter(s)	
* You do not have to resend copies of the enclosed origin declarations upon reply.	* You do not have to recend copies of the enclosed origin declarations upon reply.	

현 행	개 정 안	비고
[별지 제38호서식] 체약상대국 원산지 확인요청 (사실/회신)통지서 <개 정>	[별지 제38호서식] 체약상대국 원산지 확인요청 (사실/회신)통지서	
문서(관리)번호:	문서(판리)변호:	○ 결과 통지 관련 조사대 상자의 예측가능성 확대를 위해 내용 추가
원산지증명시 2 3 3 보고 보호	변호 복업용정사항 회산병용 전문내용 1 2 3 3 3 4 4 4 5 5 4 4 5 4 5 4 5 5 5 5 6 5 6 7 8 6 9 6 9 8 7 8 7 8 9 9 9 8 9 9 9 9 9 9 9 9 9 9	
OO과 담당자 OOO 우 OOOOO 주소 OO시 OO동OOO / www.customs.go.kr 신화 /fax /e-mail	OO과 남당자 OOO 우 OOOOO 주소 OOA OO동OOO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현 행	개 정 안	비고
[별지 제38호의2서식] 체약상대국 수출 자 등 원산지조사 사실 통지서 <개 정 >	[별지 제38호의2서식] 체약상대국 수 출자 등 원산지조사 사실 통지서	
문시(판리)번호:	문서(관리)변호: 제약상대국 수출자 등 원산지조사 사실 통지서 ③ 조사 대상자(국내수입자) 상호(법인병) 상형(법인병) 상병(대표자) 추소 ②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 있.체 명 소.관.(조시	결과 통지 관련 조사대상자의 예측가능성 확대를위해 내용 추가
변호 변경변호 품명 수입금액 대상 변경변호 (원급일차 (건불) 원산지증명서 변경일차 (원물도) (건불) 기업 2 2	③ 체악상대국 수출자 등에 원산지조사 관련 요청사항 대상 원산지증명시 변호 (반급일자) (건용코드) (전공) 전호 2 3 보호 설문내용 1 2 3 3 보호 요청사항 1 2 3	
3 요청일 1.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 원산지조사 사실 통보시: ○ 귀 사에 OO(yy,mm,dd)호로 통보한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 000건(yy,mm,dd ~ yy,mm,dd) 중 00건(상기에 대상 원산지증명서 기채)에 대해 국내 조사결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 추가 확인을 위해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체1/조제1항에 따라 상대국 수출자 등에 대해 원산지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 아울러 청당한 사유 없이 수출자 등이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체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체출한 경우 등 동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배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 4 단당자 ○ ○ ○ ○ ○ ○ ○ ○ ○ ○ ○ ○ ○ ○ ○ ○ ○ ○ ○	1. 제약상대국 조사대상자 원산지조사 사실 통보신: O 귀 사에 OO(yy,mm,dd)호로 통보한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 000건(yy,mm,dd~yy,mm,dd) 중 00건(상기에 대상 원산지증명서 기재)에 대해 국내 조사결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 수가 확인을 위해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약상대국 수출자 등에 대해 원산지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O 「자유무역합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7조제6항에 따른 결과통지는 제약상대국 수출자 등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통지할 예정입니다. O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출자 등이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O O 제 관 장 직인 O O 제 관 장 직인 O O	

혅 했 젔 항 HJ \overline{J} [별지 제40호서식] 국제 서면조사 통지서 [별지 제40호서식] 국제 서면조사 통지서 (영문) <개 정> (영문) ㅇ 영무 표현 개정 (세관 영문 주소) (Tel) (Fax) Korea Customs Service (Tel) + 82 - - (Fax) + 82 - -(기관 e-mail 주소 / 홈페이지 URI 주소) KOREA CUSTOMS SERVICE 기관 e-mail 주소, 홈페이지 URL 주소 MM DD YYYY MM DD YYYY Mr/Ms 설명 Mr/Ms. 성명 직책(이는 경우에 기재) 직책(아는 경우에 기계) 상대국 수출자 주소 상대국 수출자 주소 상대국 생산자 주소(아는 경우에 기계) 상대국 생산자 주소(이는 경우에 기재) Tel: (+00) 00 0000000 Tel: (+00) 00 00000000 E-mail: 0000000@00000 000 E-mail: 0000000@00000.000 Our Reference No : OO-KK-역도-핵정-OOOOO(dated mm.dd.xxxx) Our Reference No: 00-KK-領도-領域-000000(dated mm.dd.vvvv) Subject: : Notification of Origin Verification(원산지조사 통지) Subject: : Notification of Origin Verification(원산지조사 등지) Dear Mr/Ms. 0 0 0 0 (To whom it may concern.) Dear Mr/Ms 0 0 0 0 (To whom it may concer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OO Customs of Korea intends to condu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OO Customs of Korea intends to conduct origin verification on the products covered by the enclosed origin supporting origin verification on the products covered by the enclosed origin supporting documents documents. The purpose of the origin verification is to confirm whether the products The purpose of the origin verification is to confirm whether the products in question in question have satisfied origin criterion and requirement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tipulated in Annex (or Appendix) of the Korea-OO FTA. We request have satisfied origin criterion and requirement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tipulated your cooperation on this origin verification. in Annex (or Appendix) of the Korea-OO FTA. Please send a reply including the followings within 30 days from the receipt of this Please send a reply including the followings within 30 days from the receipt of this 1. The enclosed questionnaire with answers to stated questions and signature 1. The enclosed questionnaire with answers to stated questions and signature. 2. Origin supporting documents (please refer to the list of requested documents) 2. Origin supporting documents (please refer to the list of requested documents) and sample If your company fails to reply within the given period or submit sufficient origin If your company fails to reply within the given period or submit sufficient origin

supporting documents, a claim for preferential taniff treatment may be denied.

In a case where extension of period for a reply or submission of requested documents is required due to unavoidable reasons, please fill out the enclosed application form and send it to us within 13 days from the receipt of this letter. In that case, OO Customs will notify your company of extended reply period which does not exceed 60 days from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is letter.

OO Customs informs your company that all the documents submitted by your company will be completely kept confidential pursuant to Korea's domestic law and the Korea-00 FTA.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Your company's cooperation is highly appreciated.

Sincerely yours.

Director 000 Division 000 Main Customs Service

Enclosed

1. Copy of Certificate of Origin (including B/L)

2. Questionnaire and the list of requested documents

supporting documents, a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may be denied.

If you would like to apply for an extension of the submission of your reply as well as the requested documents on account of an unavoidable reason, please fill out the enclosed application form and return it to us within 15 days from the receipt of this letter. You can request an extension of no more than 60 days from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is letter. After reviewing your application, OO (Main) Customs will notify you of the result as approved or non-approved.

00 Customs assures you that all the documents that your company submits will be treated with confidentiality pursuant to the domestic law of Korea and the Korea-OO FTA.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operation.

Sincerely yours,

Director 000 Division 000 Main Customs Service

Enclosed

- 1. Copy of Certificate of Origin (including B/L)
- 2. Questionnaire and the list of requested documents

	<u></u> 현	행		개	정	안	刊	고
		서면조사 자료 문) <개 정>						
Reque	est for Extension o		Verification Notice No. Date of Receipt	Requested Exp		:	ㅇ 영문 포	도현 개정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m/dd/yyyy) /N HSK(6 or more digits) If further space is needed use the continuation pages.	Description of goods	of Verification Notic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If fur 1 nee	r more digits ther space is ded use the unation pages	Description of goods		
Reason for Extension			Reason for Extension					
New Deadline Requested (mr	m/dd/yyyy-mm/dd/yyyy)		Customs Law for	the Implementati	Enforcement on of Free T	Regulation for the Special Act on rade Agreement, I hereby request of origin questionnaire.		
Customs Law for the In		Regulation for the Special Act on e Agreement. I hereby request an rigin questionnaire.	Date: (mm/dd/yyy Name: Title: Signature: Telephone: e-Mail:	CONTRACTOR CONTRACTOR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로 [별지 제41호의2서식] 국제 서면조사 자 > 료제출기한 연기신청 결정통지서(영문)	
Approval for Extension of Submission	DETERMINATION OF APPLIED EXTENSION: Requested Document Submission	ㅇ 영문 표현 개정
Verification Exporter/ Name Notice No. Producer Address	Verification Exporter Name Notice No. Producer Address Date of Receipt	
Date of Receipt of Verification mm/dd/yyyy Notice mm/dd/yyyy	of Verification mm/dd/yyyy Notice S/N HS(6 or more digits) Description of goods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HSK(6 or more digits) If further space is needed use the continuation pages.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If further space is 1 needed use the continuation pages. 2	
Reason for Approval	Determination of Applied Extension Reason for	
Approved/ Unapproved (Reason) ※ 중인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유 기계	Approval Non-approval Approved mm/dd/yyyy (mm/dd/yyyy)	
New Deadline Permitted # 승인한 경우에만 기계	Deadline # 승인한 경우에만 기계 (승인한 경우) In pursuance to Korea Customs laws and regulations, this is to notify you of approval for your request for an extension of time to reply to the verification of origin questionnaire.	
(승인한 경우) In pursuance to Korea Customs laws and regulations, this is to notify you approval for your request for an extension of time to reply to the verification origin questionnaire.	of (승인하지 않은 경우)	
(승인하지 않은 경우) In pursuance to Korea Customs laws and regulations, this is to notify you non-approval for your request for an extension of time to reply to the verification of origin questionnaire.	Date: mm/dd/yyyy (Mr.Ms.) 999	
Date: mm/dd/yyyy O O Regional Customs FTA Implementation Division O Director:	Director OO Division OO (Main) Customs	
	<u> </u>	

혅 했 개 정 아 ĦJ \overline{J} [별지 제42호서식]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 [별지 제42호서식]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 (영문) <개 정> (영문) ㅇ 영문 표현 개정 세관 영문 주소 (세과 영문 주소) (Tel) Korea Customs Service (Tel) +82 - - - (Fax) +82 - - -(기관 e-mail 주소 / 홈페이지 URL 주소) KOREA CUSTOMS SERVICE 기관 e-mail 주소, 홈페이지 URL 주소 MM DD TTTT MM DD YYYY Mr/Ms 성명 Mr/Ms. 성명 직책(이는 경우에 기재) 직책(아는 경우에 기재) 상대국 수출자 주소 상대국 수출자 주소 상대국 생산자 주소(이는 경우에 기재) 상대국 생산자 주소(아는 경우에 기계) Tel: (+00) 00 0000000 Tel: (+00) 00 0000000 E-mail: 00000000@00000 000 E-mail: 0000000@00000 000 Our Reference No : OO-KK-915-913-000000 dated mm.dd.vvvv) Our Reference No : 00-KK-95-43-000000(dated mm dd yyyy) Subject: (Preliminary/Final) Decision on Origin Verification Subject: decision(Preliminary) on origin verification Dear Mr/Ms, 0000 (To whom it may concern.) Dear Mr/Ms. 0 0 0 0 (To whom it may concern.) In accordance with Article 00 of 00 FTA Annex (or Appendix) and Article 17 of In accordance with article 00 of 00 FTA Annex (or Appendix) and article 17 of Act on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00 Agreement, 00 Customs of Korea notifies your company of a (preliminary/final) decision on origin verification conducted for Reference No : 00-KK-연도-현명 Customs of Korea notifies your company of a decision(preliminary) on origin verification conducted for Reference No : 00-KK-연도-협정-000000 (dated mm.dd.yyyy). -000000 (dated mm.dd.yyyy). (위상자 충족시) 00 Customs of Korea confirms that the origin certificate issued by your (원산지 충족시) 00 Customs of Korea confirms that the origin certificate issued by company is valid, and satisfies origin criterion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tipulated your company is valid, and satisfies origin criterion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tipulated in Article 00 of 00 FTA Annex (or Appendix). in article 00 of 00 FTA Annex (or Appendix). (원산지 불충족시) As the origin certificate issued by your company does not meet (위산지 불충족시) As the origin certificate issued by your company does not meet the the requirements stipulated in Korea-00 FTA, a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requirements stipulated in Korea-00 FTA, a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may be treatment may be denied. Please refer to the below for detailed reason for the denied. Please refer to the below for detailed reason for the denial. * (특혜과세 대우 거절 사유 기술) * (특혜관제 대우 거절 사유 기술) In addition, OO Customs informs your company that you have opportunity to make an In addition, QQ Customs informs your company that you have opportunity to make an objection to the (preliminary/final) decision within 30 days from the receipt of this objection to the final decision within 30 days from the receipt of this letter in lett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paragraph 7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accordance with article 17 paragraph 7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Sincerely yours. Sincerely yours. (Mr.) 000, 000-000 (Mr.) 000, 000-000 Director Director 000 Division 000 Division 000 Main Customs Service 000 Main Customs Service

현 행	개 정 안	비고
[FORM 45] Consent form of submitting origin supporting documents <개 정 >	[FORM 45] Consent Form : Submission of Origin Supporting Documents, etc.	
Consent Form of Submitting Origin Supporting Documents 1. Location (Place of business): 2. Company name (Employer's identification number): 3. Representative (Name): Birthday:	Consent Form: Submission of Origin Supporting Documents, etc. 1. Location (Place of business): 2. Company name (Employer's identification number): 3. Representative (Name): Birthday:	○ 영문 표현 개정
Regarding the origin verificatio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ooo of ooo FTA, our company agrees to submit origin supporting documents, relative records, other supporting documents and products requested by regional customs officers of Korea.	Regarding the origin verificatio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000 of 000 FTA, our company agrees to submit origin supporting documents, relative records, other supporting documents and products requested by regional customs officers of Korea.	
Date:	Date:	
Location (Place of business) :	Location (Place of business) :	
Company name (Employer's identification number):	Company name (Employer's identification number):	
Submitter (Name) (Signature)	Submitter (Name) (Signature)	
To the Customs Collector of OOO Customs	To the Customs Collector of OOO Customs	

현 행	개 정 안	비고
[별지 제47호서식] 제출자료 보관증 <개 정 >	[별지 제47호서식] 제출자료 보관증	
제출자료 보관증	제출 <mark>자료 보관증</mark>	ㅇ 기재사항 정비
1. 소재지 (사업장): 2. 업체명 (사업자번호):	1. 업체명;. 2. 사업자번호 :	
3, 대표자 (성 명): (당 세)	3. 소재지 (사업장): 4. 대표자 (성 명): (생년윌일):	
귀사에 대한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등의 목록」의 서류 또는 물품을 우리 세관에 보관 합니다. 귀사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자료 등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비밀자료로 관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귀사에 대한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등의 목록」의 서류 또는 물품을 우리 세관에 보관 합니다. 귀사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자료 등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비밀자료로 관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귀 중	소속: 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귀중	
210mx×237mm(일반용지 60g/㎡(개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비고
[FORM 47] Document submission	[FORM 47] Certification of Receipt of	
receipt <개 정 >	Documents/Goods	
receipt VIII 0 /	Documents, doods	
		ㅇ 영문 표현 개정
	Certification of Receipt of Documents/Goods	
Document Submission Receipt	and the contract of the contra	
	1. Business Name :	
1. Location (Place of business) :	2. Business Identification (Registration) Number :	
2. Company name (Employer's identification number):	3. Business Location :	
2. Company name (Employer's Identification number)	a in the control of the second	
3. Representative (Name) : Birthday:	4. Representative of Business (Full Name): Date of Birth: (mm/dd/yyyy)	
	Regarding the origin verification conducted on your company, documents or	
Regarding the origin verification conducted on your company, documents or	products indicated in the 'list of origin supporting documents, are held by	
products indicated in the Tist of origin supporting documents, are held by	OOO Customs of Korea. Origin supporting documents submitted by your	
OOO Customs of Korea, Origin supporting documents submitted by your company will be completely kept confidential pursuant to Act on Special Cases	company will be completely kept confidential pursuant to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and article	and article 000 of 000 FTA.	
000 of 000 FTA.	Date:	
Datei	Date	
Division :	Division :	
Position :	Position :	
Name: (Signature or seal)		
	Name: (Signature or seal)	

		현		ਰੋ	ij						개	そ	3 (간					1	1]		고	
[별지 제4	9호사	 - 네 원선		조사 결	과보	고서 «	<기	정>	[별지 저]49호	.서식]	원	산지	조사	결과	보고	k]						
문서(관리)번호:							문서(관리)번호:		3							Ò.	신규	발효	. 협	정 추	가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 ^{보고일자}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												•		·
① 조사 개요								*	① 조사 개요		20			- 0			===						
험정구분	FTA								혈정구분	ETA 일반특혜	(15년 년 (15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호주 CP 1영국 CR	CEPTA C H나다 C중국 CEP C함보다 TA CCSP C	마케트남 C	뉴질랜드 C 델 C인도너	본 문동비아 문동비아	5.00						
검증구분	□국내검증	□수입물품 □국제검증 □현지검증 □	거 약상대	국 확인요청					검증구분	□국내경충	□소입물품 □국제검증												
대삼국가				耳	교일자				-17.55	□서면검증	<u> 다현지검증</u>	계약상대		7.0171	N:		-5						
② 조사대상자	**			- U.O.		500			대상국가					2일자	1								
대상자 구분	□국내 □ ⁸	<u> 약상대국</u>]수출자 □정신	· - - - - - - - - - - - - - - - - - - -	산지중빙서류	받급기관	<u>□기타</u>			② 조사대상자 대상자 구분	그국내 다임													
엄체 명					13141	23 : (□수입자 □]수품자 □행신	사 □원	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100	1 -							
사업자번호				- 32	막처	Fax: (업체명	Š.			- 6	락처		₹ :() - Rax :() -							
대표자 성명	is .			회사	설립일자	6			사업자변호	ia .			#1.21	4210171	e-mail:	@	-						
해외공급자부호				통관	교유부호				대표자 성명 해외공급자부호	<u> </u>			12 TABS	설립일자 교유부호	190		-						
업종/업태	×.			회사	나 규 모	ĵ.			업종/업태	ás .			- 1	· 규모	i i								
사업장소재지	사업장소재지								-5														
공장소재지									공장소재기								-1						
	구분	품명 (HS코드)		해년도 금맥(원)	전년 건수 급	도 ·맥(원송) ·		년도 금맥(원)	8.82401	구분	품명 (HS코드)		해년도 금액(원)(8)	건년5 건수 금 ⁴		건건년도 수 급역(d.♣							
수출임실격 (주요용품)	÷ 💝			3		26	Š		수졸입실객 (주요등등)	수출	(1823)												
E	<u>କସ</u>	<u>.</u>		÷	3	26	- 6	- 4	3-27-36-36-6-5-	수입				v-									
주요거래쳐									주요거래처														
③ 조사 대상 원	산지증명서								③ 조사 대상 원	산지증명서	ì												
C/O발급변호	발급일	품명(HS	코드)	원산지기준	원산지	개수/중	량 금	맥(천물)	C/O발급변호	발급일	품명(HS	코드)	원산지기준	원산지	개쉬중량	금액(천물)							
夏	25	10	5		6	a a		<u>10</u> 2									-						
<u> </u>	33	*			65	Se	8	26			39				ă.		33						
④ 조사결과(개요	2)							(60)	④ 조사결과(개요	2)		160				*							
조사기간	20 , ,	~ 2D , ,	.(일)					조사기간	20	- 20	(일)				-						
조사대상기간	20 , 죝	~ 20, 糧(실적분)						조사대상기간	22													
i	73							7	1														

현 행	개 정 안	비 고
현 행 <신설>	[별지 제50호의4서식] 원산지조사(재조사) 결과통지서	비 고 ○ 재조사에 따른 원산지 조사 결과통지서 신설
	조치사항 * 판단이유 및 법적근거 조치사항 * 특례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정수 또는 원산지분인정, 발금·과태로 등 구분 관체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기타세 부가가치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합 계 예상 추징액 분임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등 1. 과세천척부심사 채조사 결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의 경우 ○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경정처분의 통자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법 체18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거나 체119조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채조사 결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의 경우 ○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채조사 결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의 경우 ○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법 제119조에 따라 심자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통) ○ 아울러,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변호사,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 시 관 장 직인 ○ ○ 시 관 장 직인	

혅 햀 개 정 아 刊 \mathbf{I} 벽지 제53호서식]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별지 제53호서식]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문 <개 정 > 대한 불복절차 안내문 ㅇ 용어 정비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문(예시)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문(예시) □ ooFTA 현정 제00조 및 「자유무역현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 OOFTA 현정 제00조 및 「자유무역현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귀사에서 법률(이하 PTA특례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귀사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실시된 원산지조사 결과 수입신고번호 00000-00-0000000 등 수입한 물품에 대해 실시된 원산지조사 결과 수입신고변호 00000-00-0000000 등 총 0건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협정관제 적용이 배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 0건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사가 워산지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귀사가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ㅇㅇ세관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ㅇㅇ세관장에게 이의제가 할 수 있습니다. ※ 근거규정 : 자유무역현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항 拳 근거규정 : FTA특례법 제17조제7항 □ 아울러, 귀사는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배제 처분에 대해 아래와 □ 아울러, 귀사는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배제 처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장 등에게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관장 등에게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거규정 : 관세법 **제118조부터** 제132조 ※ 근거규정 : 관세법 세118조부터 제132조 제기 기간 종류 소관위원회 비고 과제전통지 받은 제관장 종류 제기 기간 재결청 소관위원회 비고 과제전적부심사 세액납부 前 날부터 30일 이내 관세청장 관세심사위원회 과세전통지 받은 세관장 이의신청 원하는 경우 과세전격부심사 세액납부 前 세관장 날부터 30일 이내 관세청장 처분을 한 것을 안 날 심자청구 심판청구 관세심사위원회 하나를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 (처분 통자를 받은 날) 세관장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관회의 처분을 한 것을 안 날 선택하여 부터 90일 이내 관세청장 심사청구 하나를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장 감사위원회 청구 (처분 통지를 받은 날)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관회의 선택하여 부터 90일 이내 감사원 심판청구 감사원장 감사위원회 청구 □ 부족세액의 장주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가산제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날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산제 □ 부족세액의 장수와 관련하여 수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가산세 면제 (보정이자)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ㅇㅇ세관장에게 제출(관제청 전자통관시스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별자 제12호시식의 가산세 (unipass customs gokr)으로 전송 또는 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보정이자)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ㅇㅇ세관장에게 제출(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근거규정 : 자유무역현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주 및 (unipass customs go kr)으로 전송 또는 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 근거규정: PTA특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 또한, 세관장이 경정교자 하거나 원산자조사 통지를 받은 수입신고 건을 수입자가 □ 또한, 세관장이 경정고자 하거나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은 수입신고 건을 수입자가 수정신고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수정 수정신고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수정 수입제금계산서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귀사가 협정 및 관련법령에 수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귀사가 협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스스로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ㅇㅇ세관장에게 수정수입계산 따라 스스로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ㅇㅇ세관장에게 수정수업계산 서의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의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 근거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월 년 월 일 OO세관 OO과장 OO세관 OO과장